

제 38회 제 1차 임시회 목포시 의회 본회의 회의록

1. 일 자 : 1955(4288)년 6월 10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 성립

참석의원 : 17명

朴贊圭, 明南喆, 孫白洙, 金昌賢, 鄭應杓, 金慶禧, 李文吉,
李在洪, 金子洪, 吳世一, 金三星, 金八用, 金南鎭, 金永完,
金京炫, 林一南

불참의원 : 4명

李小圭, 李福柱, 金吉煥, 文宅鎬

4. 출석 공무원

市長 및 各 議長

5. 개회 선언

議長 (오전 10시 30분)

6. 보고 사항

- (1) 제 37회 회의록 낭독 통과
- (2) 감사장 발송 경과 보고 및 감사장 수여
- (3) 한국 상업은행 유치 중간 보고
- (4) 시내 文福萬氏의 진정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
- (5) 호남동장 및 죽교4구동장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 결과 보고
- (6)대여미 배급 진상 조사 결과 보고

7. 토의 사항

※ 죽교 4구동장 및 호남동장 문제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 보고에 있어 당
시 임시위원장에게 각 의원으로부터 보고 지연 및 연기에 대하여 질의 응답

이 있었음.

※ 회의록 낭독에 있어 10분간 휴회할 것을 요청 수락

◇李文吉의원

- 당시 위원장 金八用의원의 단독적 행위는 전의원을 모독한 것이니 징계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

◇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 17명 중 가 4표 폐기

※오전 11시 5분 金京炫의원 퇴석

◇金三星의원

- 호남동장 및 죽교4구동장 진상 조사 위원회에 있어 그 당시 발언자로서 그 내용이 조사 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처리까지 일임하고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건의하고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자고 동의를 하였으나 회의록에 누락이 있으니 수정키로 동의.

◇議長

- 표결 하겠음.

가 12표 가결

◇金永完의원

- 목포지방의 판자집 철거 문제는 타 지방과 비교하면 심한 조치였으며, 그 사람들은 노상에서 방황하게 될 실정이나 판자집 철거에 있어서는 대책이 수립된 이후 철거를 하도록 당국에 건의할 것을 동의 (재청, 3청)

◇議長

- 표결 하겠음

전원 찬동 가결

◇金八用의원

- 오전 12시 5분부터 10분간 휴회 요청에 의하여 휴회 하였음

◇議長

- 속개 선언 (오전 12시 15분)

※휴회가 끝난 후 보고사항과 여히 金八用의원으로부터 회의록 낭독이 있었음.

8. 휴회 선언 : 議長 (오전 12시 55분)

9. 속개 선언 : 議長 (오후 1시 30분)

※오후 1시 45분 金京炫의원 참석

◇吳世一의원

- 판자집 철거에 있어 막중한 금액을 회사하여 주신 현주교에게 감사장 수여를 할 것이며, 참가 의원은 금일 선출된 각 분과 의원장으로 할 것을 동의

◇金子洪의원

- 분과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인선을 최선을 다 하기 위하여 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것을 긴급 동의 (재청, 3청, 7청)

◇議長

- 표결 하겠음

재석 17명 중 9표가 부결

10. 부의 안건

(1) 각 분과 위원장 선거의 건

· 감표의원으로 明南喆의원, 金南鎭의원을 지명

(2) 투표 방식

· 무기명 투표

(3) 투표 결과

· 내무분과 위원장 : 吳世一의원 - 4표로 당선

· 산업분과 위원장 : 金吉煥의원 - 3표로 당선

- 문교사회분과 위원장 :李文吉의원 - 3표, 金南鎭의원 - 3표로 동표수 결
과 연장자로서李文吉의원으로 결정
- 징계위원장 : 林一男의원 -3표로 당선

◇議長

- 회의록 서명에李文吉, 金慶禧의원을 지명

11. 폐회 선언 :議長 (오후 2시 15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날인 함

1955(4288)년 6월 14일

議長 : 朴贊圭

議員 :李文吉

” : 金慶禧

作成者 書記 : 洪南植

제 38회 제 1차 임시회 목포시 의회 본회의 속기록

(오전)

◇議長

- 오늘은 6월 14일 28년전 순종께서 경술년 합병이라고 하는 것을 원통하게 당하시고 통분 비통해서 세상을 지내시다가 이 세상을 승하하시고 이것이 곧 창덕궁을 하직 하신 날이 올시다.

이날 학생들을 선두로 해 가지고 우리 수 많은 국민은 금곡의 영직까지 도열한 가운데 기미독립 선언을 다시 이 세계 만방에다가 재선포 했던 그 날이 올시다.

여러분 잘 아신바와 같이 어제는 역전에서 일제, 용공을 분쇄하자, 소련 불력의 공산제국주의를 분쇄하자고서 시민이 외치고 난 그 뒷날인 오늘 우리는 열과 성을 가지고서 시민의 복리를 가져오자고 하는데 오늘부터 수 십일 동안을 기해서 열과 성을 가지고서 좋은 의견을 많이 토하여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어서 이 나라 이 목포시민에 이바지 해 주기를 간절히 비우고 이것으로써 개회사를 가름합니다.

15명의 출석으로써 성원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부터서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차 회의록 낭독하여 주십시오.

◇書記 박찬대로부터

- 제 37회 회의록 낭독이 있었음

◇議長

- 오늘 장정 환송을 하자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곧 장정들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일 환송을 하여야 하겠으면 지금부터 아마 호적 병무과 앞에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가지 보고는 중단하고 좀 있다가 와서 하겠습니다.

(휴 회)

◇議長

- 그러면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5분)

◇書記 박찬대로부터

- 계속해서 회의록 낭독 하였습니다

◇議長

-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이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마 이의가 없으신 모양 같습니다. 통과합니다.

다음 보고 사항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書記 박찬대

- 감사장 발송 경과 보고와 상업은행 유치 운동에 대한 중간 보고가 있었음

◇議長

- 그러면 文福萬氏의 진정서에 대한 내용 진상 조사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金南鎭의원

- 지난번 의회 때 시내 文福萬氏가 본 의회에 진정한 그 진상 조사 위원으로써 조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서 의거해서 보고 하였습니다)

◇議長

- 그러면 본 건에 있어서는 시로씨는 어떠한 손을 댈 수 없는 결론이겠지요.

그럼 호남동장과 죽교 4구동장 문제를 가지고서 5인 조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金八用의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金八用의원

- 호남동장 문제와 죽교 4구동장 문제는 오후에 보고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議長

- 그러면 오후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전에 회의가 끝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하겠습니까?

◇金八用의원

- 그렇지요. 내일 하지요

◇金三星의원

- 이 문제는 인사 문제인 만큼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에 서 결의를 하여 가지고 특별히 5인 위원회에 위촉을 하였는데 그것이 조사 하는데 상당한 시일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할 것을 어찌서 못한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를 듣고 오후에나 내일 하여야 하지 이유도 말씀하지 않고 막연하게 연기한다는 것은 이해 곤란합니다. 그러니 어찌 연기하겠다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金南鎭의원

-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만은 서류 내용을 완전히 검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 내용을 검토하여 그것을 완전히 파악 해서 완전한 문서를 만들어서 하기 위하여 오늘 보고를 못한 것입니다.

◇金三星의원

- 회의 규칙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회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내 소란으로 중단

◇金八用의원

- 그 때 사실은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문구가 틀린 감이 있고 그 때 나는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거기 회의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려는 것이 이유입니다.

◇議長

- 그러면 호남동장 문제와 죽교 4구동장 문제에 있어서는 조사 위원으로써 좀 그 문면에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시정하는데 시간을 요한다니까 이 다음에 보고하기로 하고 그 다음 대여미 진상 조사 관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십시오.

◇金子洪의원

- 이 대여미 관계도 서류상 내용을 검토 하여야 하겠으니까 오후에 하겠습니까.

◇金昌賢의원

- 어디까지나 공정한 입장에서 볼 때 조사 관계 보고 오후로 민다고 해서 회의를 지연 시킨다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서 볼 때 각 조사 위원들의 소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로 말하자면 37회 의회 때 우리 의회의 결의로써 5인 위원에게 일임하였는데 그렇게 책임있는 일을 못할 것 같으면 왜 그 당시에 말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에 와서야 보고를 못하겠다고는 것은 펍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어디까지나 태만하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못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못한다고 할일이지 10일 20일 지났으나 그 동안에 아무런 결정을 짓지 못하였다가 오늘에야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일반 의원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규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한다면 오전 회의에서 역시 부의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결과 보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李在洪의원

- 지금 金昌賢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사 위원을 의심하고 어떠한 흑막이 있다고 말씀하시었는데 이러한 말씀은 삼가하여 주십시오.

호남동과 죽교 4구동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일같이 산적 같은 안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서울을 갈 것인데 서울을 안가고 3차에 걸친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한번 회의를 시작하면 5시간 이상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간사께서 낭독한바 같은 회의록의 기록을 냈으며, 우리 다섯 사람(5인)이 호남동 문제의 최종회의를 5월 25일에 하였습니다. 그래 5월 25일의 회의에서는 그 날짜까지 기입하여서 6월 19일 내에 위원회의 종말의 결과가 행정부에서 실현 단계를 이룰 것인데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 건의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金八用의원의 잘못이지 의원

전체를 모두 잡아서 흑막이 있니, 의심이 있는 하는 것을 나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듣기에 대단히 거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을 당연히 오늘까지에는 행정부에서 할 일을 다 하여야 하고 하니 조사 위원 전체를 털어서 말씀한다면 곤란합니다. 그 진상을 잘 알아서 오해 없기 바랍니다.

◇金三星의원

- 방금 李在洪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선 행정을 하는 동의 행정 책임자인 동장 인사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애로를 느낄 뿐만 아니라 사무 진행에 커다란 지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 세번이나(3차) 회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본 회의에서 그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것인데 보고하기까지에는 문서상으로 미진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는 그날 회의의 기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그날 5명의 위원회에서 결의한 회의록을 낭독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李文吉의원

- 저는 아주 태만해서 37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호남동장, 죽교 4구동장 문제 등 대여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러나 제37회 회의가 지나고 오늘까지는 수십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마당에서 그 사건을 담당하신 金八用의원이나 金子洪의원이 지금 아직 그 문서가 미진하여서 오늘 오후 또는 내일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13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며, 의원이 우리 21명 전체의 모독을 시킨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다른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시민들도 와 있고 하니 이 문제는 이것으로써 끌이고 다른 것으로 들어 갈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金子洪의원

- 대여미 관계는 거기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역시 오후로 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을 조사가 털 되거나 미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오후에 보고를 할려는 것

이니 오해 말기를 바랍니다.

※議長

- 회의 규칙에 의해서 기록이 무엇이요. 기록하는 이 있음

◇李文吉의원

- 회의록에 있을 것이니 회의록을 읽으라고 대발 노발

※장내 소란

◇書記

- 회의록 낭독과 경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金昌賢의원

- 방금 회의록에 의하면 아까 金三星의원께서도 말하였지만 지금 그것은 행정부의 한 분과 의원 한 분간의 상의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한 것은 21명 전체를 모욕한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당연히 25일부터 10일까지 그 사이 10일간이라도 하루 한번 가서 못 만나면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여덟번 까지라도 다녀서 할 일을 하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행정부의 태만이란 이 것만이 아니라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다섯분이 책임지고 사과하여 주기 바랍니다.

◇金永完의원

- 예—저희들은 5월 25일 최종 회의를 하였습니다.

방금 金昌賢의원께서는 이 책임이 의원회에 있니, 행정부에 있니 하는 것을 말씀하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자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5인 위원회는 절대로 그런 오해를 양게 완전히 의무를 지켰습니다. 그날 25일 회의를 마치고 나서 어제까지 384시간의 길다란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에 만일 어떤 애로가 있다면 5명중 한 사람에게라도 이야기를 하여서 합의를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등의 연락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어디까지나 공정회의이며, 21명 의원이 회의 결의를 보아 가지고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소회의의 기록은 공문서일 것입니

다.

이 공문서를 그 회의를 할 때는 위원의 자격으로써 참석하였지만 회의가 끝난 후에는 당연히 개인의 자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의의 공문서를 어떤 참고가 있다고 해서 개인이 소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보고를 하겠다는 것은 金八用의원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지 절대로 우리 5인 위원회는 책임 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듣기로 참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참고가 있으면 5월 25일부터 지금까지 384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金八用의원의 개인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金八用의원의 자신이 이 문제의 사과할 일이지 5인 위원회는 완전히 책임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 위원회에서 책임이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이 명백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李文吉의원

- 아까 金八用의원의 말씀은 아직 5명 위원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였는데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속기 불능

◇金永完의원

- 어디까지나 회의는 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5인 위원회는 폐회 선언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인 위원회는 절대로 그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鄭應杓의원

- 조사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잠깐 그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金昌賢의원께서는 확실한 진상을 아시는지 어쩐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5인을 모욕하는 언사를 수차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의회생활을 하면서 상호간 친목을 분리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실은 우리 5인 위원회가 지난 25일 부시장실에서 정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말을 완전히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와서는 서류가 없어서

보고를 나중에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란으로 중략)

방금 金昌賢의원의 조사 위원회 태만성을 규탄한다는 어구는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文吉의원

- 지금 본 건은 여러가지 말이 있었는데 金永完의원의 말에 의하면 5인 위원회에서 완전히 합의를 보았는데 金八用의원이 단독적인 행위로써 21명 전원을 모욕한 것이니 金八用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金八用의원

- 지금 李文吉의원은 제 말을 잘못 알아들은 모양인데 우리 5인 위원회에서 완전히 합의는 보았으나 문구를 보니까 문구에 차이가 있으니 오늘 몇 분에게서 합의를 하여 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李文吉의원

- 金永完의원, 鄭應杓의원은 5인 위원회에서 완전히 합의를 보았다고 말씀하였는데

※장내 소란, 金八用의원 발언

◇李在洪의원

- 조사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늘 그런 말이 나오니 듣기에 대단히 거북합니다. 아까 행정부에서 말한바와 같이 회의록을 가지고 4, 5차나 찾아가서 재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金八用의원은 오늘 이 시간까지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섭섭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문제는 특히 날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 이 5인 위원이 나가서 오는 15일까지 결정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金三星의원

- 이 인사문제는 초시급한 문제입니다.

아까 李在洪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6월 10일까지에는 완결을 짓기로 되었다

는데 金八用의원은 서류의 불비로 보고를 못하고 있으니 행정부에서는 무엇을 집행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결의를 무시하고 일을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하고 의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八用의원 혼자서 단독으로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분 혼자 서하여 버립시다.

◇金昌賢의원

- 鄭의원의 말씀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제가 일방적인 말씀이 아니고 저 역시 들은바가 아직도 미결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이지 무슨 모독하려하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金永完의원

- 실은 조사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될 수 있는데로 이런 말을 안할려고 하였는데 그 한계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명백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회의에서 결의할 때는 그만한 중대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긴급히 논의하고 여기에 대한 잔상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 목적입니다. 그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네번이나 회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행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오후에 하니, 문구가 틀렸으니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날은 만장일치로 한 사람도 이의 없이 해결된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해결된 이 문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있는가? 金八用의원은 자치법을 잘 알고 계시는지 알 수 없으나 자치법에는 최후의 합의 결말을 본 즉시 결의사항을 행정부에 돌려주기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앓주어 가지고 10일까지 행정부에서는 일을 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막조차 모를 정도니 이것은 실지 金八用의원이 이 자리에서 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상 갑론박을 하지 말고 5인 위원회는 그 당시 金八用의원과 완전 합의를 보았으니 金八用의원의 과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보고를 연기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金八用의원 개인 문제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공과 사를 분명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金八用의원 깨끗이 말씀하십시오.

◇金八用의원

- 金永完의원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여유를 주시면

※장내 소란

◇李文吉의원

- 긴급 동의 물어 주십시오.

◇議長

- 두 동리 동장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끝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八用의원 어떠한 문구를 가지고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걸 10분동안 여유가 있다면 합의하여 이 자리에서 말씀하겠다는 10분간 여유를 줍시다.

10분 동안 휴회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동의를 살아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議長

- 李文吉의원의 논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金八用의원이 오늘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이 변경될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의 심정이 의아스럽게 보고있으니 金八用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는 것입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의 성립 되었습니다.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가타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가 4표로써 폐기되었습니다.

◇明南喆의원

- 호남동장, 죽교 4구동장 문제는 다섯사람 특별 위원회가 회의록만으로써 보고를 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설령 회의록이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의원 자신만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조사 위원의 한 사람은 아무나 보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호남동은 어떻게 하고 죽교 4구동장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회의록을 보고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또 설령 회의록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3, 4명이 좋다고 해서 하여 놓은 것이 글썽 회의록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씀입니까.

◇議長

- 네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는데 그 문구를 가지고서 합의를 보아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네분이 합의가 있었으면 최근의 합의를 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보고하였으면 그만인데 그 문구가 틀려서 합의가 덜 되었으니 그 점에 있어 가지고 네분이 합의하겠다는데 있어서 4명의 합의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10분간 휴회하겠습니다.

(휴회 오전 12시 5분)

※陳福春의원 자리에 앉아서 오전 12시도 불고하였으니 네분은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하도록 하지요.

◇議長

-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金八用의원 약속대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확실히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니까 났다 하는 이 있음

◇金八用의원

- 호남동과 죽교 4구동장 문제에 대한 우리 분과 위원회의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낭독이 있었음

※陳의원 자리에 앉아서 전부 읽을 것 아니라 골자만 읽어 버리시오. 하였음

◇金八用의원

-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낭독하겠습니다.

◇金子洪의원

- 예—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하기 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 자신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애시당초 시의원으로 입후보 하였을 때 시민에게 공약을 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 공약은 시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싸우겠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본 의원 개인 자신의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구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동장에게 반장 회의를 소집하여 달라는 것이 하등의 월권이 아닐 것이며, 동장으로써 시의원이 요청한 반장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것은 월권이 아닌가?

그 점 충분히 고려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일을 추진하여 나가자는 데는 애로가 있고 고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는 돌파해서 우리 목포시를 위하고 자기 출신구 동을 위한 복리 증진이 있다면 어디까지나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장회의를 소집하였던 것이며, 반장 회의 소집도 본 의원 자신이 소집한 것이 아니고 몇 몇 반장들에게 이야기하였으니 반장 자신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 점 참고로하여 징계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 그러면 이 두 동리 동장 문제는 이것으로써 겨말을 진 것 같습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林一男의원

- 전반 37회 회의 때 죽교 4구동장과 호남동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이 있고 논의 끝에 그 진상을 조사하기로 본 회의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사 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결국 가서 처리까지 계속해서 하고있

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조사 보고에 의하면 金子洪의원을 징계자격 위원회에 회부하고 동장을 권고 사직을 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지로 징계 위원회에 金子洪의원을 회부하여야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규명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한 바는 전반 회의에 의해서 보고를 들은 후 본 회의에서 가부를 처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본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고 조사 위원회에서 처리한 그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李在洪의원

- 金子洪의원을 징계 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어떠한 징계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의 직접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의원의 모든 인사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징계 위원회가 있습니다.

징계 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아니라 징계 위원회가 있으니까 반장 회의의 소집에 대해서 징계 위원회에서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즉 우리 위원회에서 징계 위원회에서 조사할 것을 일임 하겠습니다.

◇林一男의원

- 조사 위원회에 묻겠습니다.

조사 위원회에서 처리까지 계속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조사만 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결정하기로 되었는가?

확실히 그 한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書記 박찬대

- 시정계장으로부터 속기록 낭독이 있었음

※장내 소란 속기록에 기록이 누락되었다고

◇鄭應杓의원

- 그 때 金三星의원이 죽고 4구동과 호남동장 문제는 5인 위원회에 일임하고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건의하고 그 처리를 결말만 본 회의에 보고하기로 되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金三星의원

- 속기록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발언자로서 수정 동의합니다.

수정내용은 5인 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처리까지 일임하고 건의 안건은 5인 위원회에서 행정부에 건의하고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자고 동의하였습니다.

수정 동의합니다.

◇議長

- 수정 동의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타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가 12표 가결

그러면 대여미 사건에 대하여 鄭應杓의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金南鎭의원

- 대여미 방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하였음.

※보고도중 金永完의원과 金南鎭의원 간에 일문 일답이 있었음

※장내 소란

◇金永完의원

- 목포에서도 전번 판자집 철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추진 위원회가 구성하였는데 그래서 단행 도중에 국회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어 가지고 내무부 통첩으로 당분간 강권 발동을 중지하였는데 최근 신문 보도에 의하면 7월말이 넘으면 철거를 단행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순 반란 사건 때 판자집이 생겼고 그 다음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국군이 38선을 넘어가게 되자 대한민국이 살기 좋다하여 남하한 피난민과 지리산 등지의 토벌 작전에서 나온 전재민에서 판자집을 지었는데 이 사람들은 작년에 철거를 다하였으나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짓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본 회의에서 논의하여서 이 판자집 철거에 있어서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금반 서울과 부산, 대전 등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예를 들어본다면 목포가 제일 심하다고 합니다. 서울에나 논산, 대전에서는 그렇게 까지 심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목포는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심하였다는 것은 섭섭합니다.

이 판자집이 위생문제라고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정도의 위생이면 됩니다. 한국사람은 보리밥에 고추장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상 철거를 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전이하의 한국으로서는 이 정도면 됩니다. 또 방화 시설문제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목포시내의 소화전이 65개소 있는데 그 14개소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발화한다면 이 14개로 서 될 것입니까?

이러한 점 당국에 호소하여서 될 수 있는대로 대책이 선후에 단행하도록 당국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3청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 전원 찬동 가결

◇議長

-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점심 먹고 오후 1시 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오 후)

◇議長

- 그러면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작년에 선정한 각 분과위원장을 선거하겠는데 그 동안 1년에 많은 수고도 하시었고 따라서 규칙에 의해서 새로 선출하겠습니다.

◇金子洪의원

-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년을 잘 하기 위하여 또 어떤 분과위원회에는 2, 3명 밖에 앉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신중을 기여야 할 것이며, 또 2, 3명 밖에 앉되는 분과위원회도 있고 하니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하여 여기 자치법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각 분과위원장을 분과위원별로 선출하였는데 이번에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전 의원이 선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書記

- 자치법이 아니라 목포시의회 의원회 조례입니다.

※장내 소란

◇吳世一의원

- 전반 판자집 및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시장의 고충이 심하였는데 현
신부께서 많은 금액을 회사 하시여서 철거당한 사람들에게 만환씩, 2만환씩
나누어 준 일이 있으니 우리는 그 분의 은혜에 만 분지 일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거기 대성동 길이 대단히 나쁘니 그것을 좀 고쳐줄 수 있는지 시장
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市長

- 거기는 손을 본다 하더라도 대토 정도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吳世一의원

- 전반에 시장님께서는 감사장을 수여하였으니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장님의
명의로 감사장을 수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3청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 그러면 그 감사장은 행정부에서 만들어 주시면 하겠습니다. 감사장을 수여
하는데 어떠한 사람으로 할 것인가 지명하여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吳世一의원하고 議長님 하고 李在洪의원하고 가지고 가라고 하는 이 있음

◇議長

- 그러면 감사장 드릴 인선이 필요한데 李在洪의원하고 사무국에서 한 분 하
고 가지고 갈까요? (좌담식으로 상호의견 교환 결과 金子洪의원의 의견으로
써 오늘 각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가지고 가기로 하여 전원 찬동이

있었음)

그러면 의원께서 각 분과위원장을 선출하는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鄭應杓의원 자리에 앉아서 그것은 긴급 동의에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金子洪의원

- 그러면 긴급 동의로 수정하겠습니다. (7칭까지 있음)

◇議長

-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속기 불능 (林 의원 발언)

◇吳世一의원

- 기다리는 시간에 금반 시장님의 출장 경과 말씀이나 듣기 바랍니다.

◇議長

- 목포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 7조 낭독이 있었음

그러면 조례 개정의 가부를 묻겠습니다. 9표로 부결

◇鄭應杓의원

- 꼭 동의에 개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은 저희들은 이러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4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과위원장은 대계가 전부 중복 되지 않게 하여 전부가 분과위원장을 1년씩 하도록 되어서 차례로 하여왔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여 개선한다면 아무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의회 생활에서 약속하고 지켜나 온 것을 어긴다면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좋으나 그전부터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한번도 못한 분은 서운한 감도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 말씀드립니다.

◇議長

- 그러면 종전 예에 의해서 선거하기로 하겠습니다.

(투표 개시)

◇議長

- 그러면 간표 위원은 明南喆의원하고 金南鎭의원 두분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개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內務委員長 - 吳世一의원, 産業委員長 - 金吉煥의원, 文社委員長 - 金南鎭의원 하고 李文吉의원이 동점이었는데 우리 조례에 연장자로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징계 위원장을 선거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계 위원장에는 林一男의원 입니다.

그러면 과거 1년간 각 분과 위원회를 담당하시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그 네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金三星의원

- 오늘 회의는 이만 끝내고 내일 속개합니다. (전원 찬동)

◇議長

-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겠습니다.

제 38회 제 2차 임시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1. 일 자 : 1955(4288)년 6월 11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 성립

참석의원 : 12명

朴贊圭, 金子洪, 吳世一, 林一男, 明南喆, 金慶禧, 李文吉, 金昌賢,
孫白洙, 鄭應杓, 金南鎭, 金永完

불참의원 : 9명

李小圭, 金八用, 李在洪, 金吉煥, 文宅鎬, 金三星, 陳福春, 金京炫,
李福柱

4. 출석 공무원

市長 및 각 課長

5. 개회 선언

議長

(오전 11시)

※오전 11시 5분 李福柱의원 참석

6. 토의 사항

◇鄭應杓의원

- 부의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市長님이 상경 결과와 수도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듣자는 요청에 의하여 市長 및 建設課長으로부터 결과 보고 및 설명이 있었음.

※오전 11시 12분 金三星의원 참석

※오전 11시 13분 陳福春의원 참석

※오전 11시 14분 李福柱의원 참석

◇鄭應杓의원

- 수도문제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수원지의 저수량이 어느 정도 저수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기 위하여 저수지로 가볼 것을 요청하여 오후에 출발할 것을 전 의원 찬동

※오전 11시 21분 金京炫의원 참석

※오전 11시 23분 吳世一의원 참석

※오전 11시 25분 金三星의원 퇴석

◇金子洪의원

- 추가 개정 예산 심의에 있어 심심 검토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동의 (그 결과 본회의에 상정하여 본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표결결과 재석 14명가 8명 가결

◇總務課長

- 조례 개정안 부의에 있어 시장 시용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및 자동차 구입안은 형편에 의해서 보류하고 소방세 세율이 100분의 10 (호별세 할)을 100분의 20으로 정정한다는 요지

◇鄭應杓의원

- 오물 소재 수수료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시 사회과장과 각 의원간의 질의 응답이 끝난 후 해당 분과 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한 결과 본 회의 상정하여 통과할 것을 동의
표결 결과 재석 14명 전원 찬동 가결

※소방세 조례 제정안

각 의원과 소방서장간에 소방 행정에 대하여 질의 응답이 있었음

◇孫白洙의원

- 변두리 동네 시설을 강화하여 따라서 13만 시민의 복리 증진에 주력하여

주기를 바라며, 본 제정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3청)

◇林一男의원

- 대체 토론을 마치고 제 2독회로 들어갈 것을 개의 (재청)
표결 결과 동의집 재석 14명 중 가 11표 가결

◇林一男의원

- 1955(4288)년도 소방세 세율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 결과 가 8표 통과

◇(자료미상)의원

- 도축장 사용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 결과 재석 14명 전원 찬동 통과

◇明南喆의원

- 중앙도매시장 사용료 및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 결과 재석 14명 만장일치로 가결

◇議長

- 회의록 서명의원 鄭應杓, 明南喆의원을 지명

◇議長

- 폐회 선언 (오후 1시 4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날인 함

1955(4288)년 6월 14일

議長 : 朴贊圭

議員 : 鄭應杓

” : 明南喆

작성자 서기 : 洪南植

제 38회 제 2차 임시회 목포시의회 회의 속기록

◇議長

- 그러면 11명의 출석으로 성원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1954(4287)년도 제 5회 목포시 일반 회계 추가개정 예산 및 제 2회 식량 특별회계 추가개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십시오.

◇鄭應杓의원

- 이 부의안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반 시장님께서 상경하였다는 것을 지상 보도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만은 지금 목포시민이 큰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삼학도 공사 문제 기타 저수지 문제에 관해서 교섭하러 상경하였다가 그제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을 들었으면 하겠고 또한 무지한 한발로 말미암아 시민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 급수는 얼마나 저수되어 있으며, 앞으로 며칠 간이나 먹을 것인가? 이 급수 문제에 대해서 듣는바에 의하면 며칠 먹을 물이 있으며, 지금 목포시내에 수도관을 파괴하고 물을 먹고 있는데 만약 비가 오늘이라도 많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등등 서울 갔다오신 말씀을 들어본 뒤에 부의안건으로 들어갔으면 하겠습니다. (전원 찬동)

◇市長

- 거반 상경한 것은 첫째, 수도문제 둘째로는 삼학도 공사 실시 추진문제, 셋째로는 공익지료 자금을 융자하는데 인가를 얻기 위하여 서울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수도문제에 있어서는 CAC본부 수질박사 메이스씨가 2, 3차 목포에 와서 요소 요소 장소를 실지 답사한 결과 이 사람이 장소를 어디다 정하냐 하면 지금 일로면에 종전 척식회사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를 달선리 수원지의 배나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다 샘을 파서 양수를 하라 그래서 거반에 여기에다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자세히 말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수지 밑에다 샘을 파서 양수를 한다면 그 밑에 수천평의 농작물이 도저히 경작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우리가 지금 천

계천에서 양수를 하고 있으니 거기다가 장소를 잡아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메이스씨가 하는 말이 왜 내가 정한 장소에 찬성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지적하지 않는 좋은 장소를 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지적한 것 보다 더 좋은 장소가 어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할 시설을 천계천 양수하는 장소에 하여주라 하였더니 그러면 연구 하여 보겠다 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지적한 장소를 거부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CAC 본부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짤 것인데 만일에 그 예산이 빠진다면 다 틀리니까 그 것을 확실히 결정하기 위하여 이번에 올라가서 당신이 지정한 장소에 하겠습니까 하니까 모든 시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면 않는다는 장소를 왜 승락하였는가?

이것은 별수 없습니다.

이 시설 자재를 받고 일을(工事) 거기다 하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메이스씨와 충분한 타협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삼학도 공사에 있어서는 7일날 결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일내로 중앙에서 내려와서 현장을 시찰하고 올라가서 입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물었더니 금액은 아직 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하기에 말았습니다 만은 금일 중에 착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짜서 재무부에 넘겼는데 부흥부 예산이 전반의 60%를 삭감한다고 하여 다시 해무청으로 반환하였다고 하니까 해무청에 가서 각별한 고려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공익지료 1천만원 용자건에 대해서는 내무부 지방국에 들어갔더니 이것은 서류가 불충분하여 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에게 반환하지 않고 중앙에서 서류만 받아 가지고 우리시에 하등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에 올라가서야 알고 어제 시직원을 도에 보냈습니다.

찾아가고 와서 다시 그 서류를 정리하여 직원을 중앙에 보내서 자금 용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수도문제에 대해서는 유옥주의원이 공사 일을 전폐하고 각 처

에 돌아다니면서 활약을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수도문제는 유옥주의원이 활약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삼학도 공사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수도문제에 있어서는 공사가 되지 않고 이대로 한발이 계속된다면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수 밖에 없는데 내 의견으로는 호남지방에서는 지하수로써 하루에 2천톤이나 3천톤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면 이 지하수로써도 목포에 대한 문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 싶이 결국은 우리시에서 제출한 안이 달성하여야만 이 물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CAC 본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거액이어서 1, 2년에는 완전히 할 수 없고 앞으로 우리가 10년이나 너희나라에 있으면 이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이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그네들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2, 3년 밖에 주둔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10년이나 있으면 하지만 2, 3년 내에는 준공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 이면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예산으로써 약 7억이라는 돈을 우리 목포에 줄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은 당분간 곤란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도문제에 있어서는 13만 시민이 총 쫓겨하여 가지고 아주 지구전으로 활약하지 않으면 수도문제는 별수 없습니다.

이 수도문제에 있어서는 시민 여러분에게 매일 같이 불평을 들어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비를 주지 않는 까닭에 지금 부산, 서울, 대구 각 도시가 식수 때문에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받아서 천계천에 양수를 하여 그동안 큰 도움을 보아 때로는 1,200톤의 최고 양수를 하였으며, 그 다음 700톤, 500톤을 올려 오다가 오늘날 한발이 계속해서 지하수의 부족으로 450톤 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로 금월말까지 비가 안온다면 지금 현재 4개 수원지 가

운데 제 3수원지에 14만톤 외에 다른 수원지는 뽑지 못할 정도인데 다른 수원지도 있기는 4, 5천톤 있으나 전부 빼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물을 빼먹는다면 제방이 말라 가지고 구멍이 나 있을 때 갑자기 비가 오게되면 제방이 파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제 3수원지의 14만톤과 매일 양수하고 있는 450톤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방면으로 물에 대한 교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달선리 수리조합에 물이 200톤 저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서 하루에 3,000톤 가량의 물을 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물은 줄 용의가 있는데 그 요구 조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 요구조건은 평년작이 아니면 너희시가 평년작으로 곡물을 제공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 3수원지 송수관이 작아서 하루에 시내로 들어온 물량이 얼마나 되지 않으나 제 3수원지 물을 하루에 30톤씩 보낸다 하더라도 4, 5일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제 3수원지 물이 우리 시내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안이 있으나 그것은 충분한 것을 연구하지 못하고 있어 서적을 놓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안은 지금 상업학교 앞에다 양수 시설을 하여 제 3수원지 물을 뽑는 힘을 더 강하게 해서 시내에 물을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실현된다면 다소 금액이 든다하더라도 또 그 방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날자를 지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방면으로 서적을 구하고 있으니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시민에게 불평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3수원지 물을 사용하지 못할 때는 별수 없습니다.

제 3수원지 연도에다가 공설 수도를 20여개 신설하여 그 수도에서 각 동별

로 매겨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의원과 건설과장간에 자리에 앉아서 수도문제에 대해서 일문 일답이 있었음.

※장내 소란

◇鄭應杓의원

- 저희들도 수도에 대한 관심이 큼니다.

물을 잘 받지 못한 까닭에 그런데 저희들보고 시민들은 자주 묻습니다. 수원지 물이 앞으로 얼마나 먹을 수 있으며, 지금 저수량은 얼마나고 묻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3수원지에 14만톤이 있으면 그 물은 우리 목포시민이 몇일이나 먹을 수 있는지 모르니 저희들도 수원지에 가서 실지 목격하고 그 실정을 알았으면 쓰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기회를 행정부에서 만들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建設課長

- 틈만 있으면 차도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가볼 수 있습니다.

수원지에 가 보면 참 비참합니다.

언제든지 자동차는 내 놓을 수 있습니다.

※오전 회의만 마치고 오후에 가자고 하는 이 있음

※토의안건으로 들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오후에 가기로 전원 찬동

◇議長

-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 추가 개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십시오.

※ 제안자 측으로부터 설명하여 주시요, 하는 이 있음

※ 장내 소란

◇金子洪의원

- 이 추가개정 예산은 각 분과 해당하는 분과별로 심심 검토하기 위하여 각 분과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 추가개정 예산을 각 전문분과 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어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타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임의원 발언 하십시오.

◇林一男의원

- 이 추가개정 예산안을 각 분과 위원회에 회부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인가?

본회의에서 결정할 것인가?

그 한계를 확실히 하여 주십시오.

(앉아서 말하였음)

◇鄭應杓의원

- 개정 예산은 해당 분과 위원회에서 회부하여 해당 분과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본 회의에 상정하여 본 회의에서 결정 하자는 것입니다.

(앉아서 뭐라 하였음)

◇議長

- 그런데 아까 거수하다가 말아서 다시 한번 거수하여 주십시오.

가 8표로 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목포시 오물 소제 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측 설명하여 주십시오.

◇總務課長

-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 조례중에 시장 사용료하고(소란) 승용자동차 구입안은 보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방세 세율 제정 부의안건에 있어서는 호별세 100분지 10을 100분 지 20으로 고치겠습니다.

◇社會科長

- 오물 소제 수수료에 대해서 조례안에 의해서 설명이 있었음

◇明南喆의원

- 지금 현재 이 오물소제 수수료를 부과하여도 징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이 지나 한번도 오물을 실어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물 소제의 혜택을 본 구역도 있지만 혜택을 못본 구역이 많습니 다.

그리고 목포는 해변을 끼고 있는 관계상 해당된 구역에 한해서 부과하면 어 떻습니까?

◇鄭應杓의원

- 오물세를 배로 인상하는데 오물소제에 실지로 종사하고 있는 인부들의 임 금도 인상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林一男의원

- 방금 오물 소제 수수료 조례에 대해서 중간에(소란이 있었음)

◇市長

- 이 오물 소제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성적도 물론 나쁘지만 소제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여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은 이 준칙이 3, 4개월 전에 도에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인상하려 하는 것을 제가 1954(4287)년도에는 수수료를 인상 하지 말라하여 준칙으로 밀쳐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다가 이번에는 모든 물가도 상당히 올랐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인부 한 사람에게 100환씩 주다가 2백환씩 주고 있는데 100환 더 인상해서 100백환씩 하여 1개월에 만원 가까이 주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에서는 이미 이 준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만 아
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내용을 본다면 왜정 때 적용하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하다 못해서 왜정시의 준칙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통과만 된다면 지금 소제는 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서하고 충분한 타협을 하여 시내 오물 소제에 적극 노력하고자합니다.

◇陳福春의원

- 방금 시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이 오물 소제 수수료는 오물을 잘 정리하고 제거해 주는 마당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목포시내에 오물 소제 수수료를 받는 구역이 있을 것입니
다.

소란으로 명기할 수는 없으나 제7조와 제4조와 제2조 7항을 낭독하고 본 의
원이 생각에는 제2조 7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음

※ 장내소란 이하 생략

◇鄭應杓의원

- 제2조 1항을 낭독한 다음

그러면 현재 목포시에서 1년에 오물 소제 수수료를 얼마나 부과하였으며, 한
국 은행이나 다른 은행에는 1년에 얼마나 부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의원의 말씀과 같이 조합이나 일반 사회단체 은행 같은데 1
년 60환을 현재 부과하면 어느 정도인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社會課長

- 조례안에 의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음

◇鄭應杓의원

- 지금 현재 죽교리나 연동 같은 데서는 현재는 해당되지 않는데 이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社會課長

- 예 그렇습니다.
꼭 종전과 같습니다.

◇孫白洙의원

- 여기에 가까운 질문이 있습니다.

제2조 1항과 3항을 낭독한 다음 우리 목포는 어디까지나 상업 도시기 때문에 사업가를 살려야 합니다.

장내 소란으로 확실한 기록은 할 수 없으나 1등부터 3등까지를 없애고 4등부터 45등까지 하였으면 하고 특별 요구가 있을 때 마차 1대에 120환인데 똥통은 한통에 80환이면 똥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마차 한대에 120환이면 마차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음

◇社會課長

- 물론 사업가를 살리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孫白洙의원

- 이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만은 제1조 2항을 80환으로 하고 4등부터 9등까지 50환으로 하고

※ 장내 소란으로 속기 불능 관계로 의원 발언 속기 불능

◇林一男의원

- 장내 소란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기록은 못 하였으나 본 조례에 의하면 등급 차이가 많아서 이것은 부유층을 살리고 서민층을 괴롭게 하는 것이니 잘 고려하라는 요지였음

◇社會課長

- 이것은 호별세 등급에 의해서 부과된 것입니다.

◇鄭應杓의원

- 이것을 전부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목포시 오물 소제 수수료 조례안은 해당 분과 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심 검토한 후 본 회의에 상정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 鄭의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어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전원 찬성 가결

◇金南鎭의원

- 소란으로 인하여 명기치 못하였으니 시내 인분 처리에 있어서 용당동에서는 시내 거주자에 한해서는 무료로 처분하도록 한바 있는데 그 중에는 시외 사람들이 개입하여 흡수하고 있으니 시민에 한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점 시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市長

- 이 오물에 대한 요금은 시내에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는 징수 않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거번에 시내 농지경작자에 한해서는 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시외 사람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도로 징수 하였던 것입니다.

◇金京炫의원

- 거번에 제가 죽교리 뜰 거기를 가니까 거기 내려가는 뜰이 지금 1차 가랑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그 동리가 강이 될 것 같습니다.

◇市長

- 거기는 계획이 서 가지고 있습니다.

◇金京炫의원

- 그리고 이 앞에(의사당 부근)에는 전반에 동민들이 뜰을 쳤는데 이것은 어찌 됩니까?

◇市長

- 그런 집 앞에 하수구는 자기집 앞에는 각자 집에서 치기로 되었습니다.

◇議長

-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소방세 조례 제정안 상정합니다.

제안자측으로부터 설명하여 주십시오.

※總務課長으로부터 축조 설명이 있었음

※장내 소란 의원과 당국간에 일문일답이 있었음

◇鄭應杓의원

-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시민은 누구나 다 같이 호별세를 물고 있는 사람으로써 소방세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포시내에 소화관과 모든 수도 관계로 시설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지금 죽교리 꼭대기나 죽교리 뺨 바탕에 불이 난다면 소방서의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목포는 모든 시설이 제국주의 36년간에 왜놈들이 모든 시설을 자기네들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널리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8.15 해방을 본 후 자치법을 통과하여 자치제를 하고 있는 이상 빈부의 차가 없이 어떠한 것이던지 대중에게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교 1, 2, 3구동을 본다면 불이 나도 찢차 한대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조례를 실현하게 된다면 행정 당국에서 이러한 점 참작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러한 점 고려하여서 조치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항상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明南喆의원

- 지금 鄭의원의 말씀과 같이 그런 고지에 불이 난다면 자동차나 마차가 올라 가더라도 물이 없어서 불을 끌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도 과연 소방세를 물어야 할 것인가?

※ 장내 소란으로 불능

◇金京炫의원

- 지금 鄭의원과 明의원의 말씀 대단히 당연하나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논의한다면 소방세 징수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시민이 물게 될 것입니다.

◇林一男의원

- 방금 金의원의 말씀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 건은 절대로 불이 안날 것을 전제로 한다면 소방세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논법으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것과 안받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 장내 소란, 議長 중지시켜 주시요. 장내 소란

◇金永完의원

- 소방세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소방대장을 하였기 때문에 소방서 실정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말씀과 같이 소방 시설문제 이것은 왜놈들이 확실히 중심지에만 소방 시설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역시 소방 시설이라는 것은 중앙에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교리와 연동에 소방대 7구와 4구를 배치하여 놓았으며, 차가 못가기 때문에 가새이 펌프를 배치하였으며, 6.25동란으로 목포에 소방차는 한대도 없었으며, 놈들이 장성 갈재에 다 버리고 간 것을 대원들이 찾아다가 겨우 운행하고 있다는 요지의 실정 이야기가 있었음

※ 장내 소란

◇孫白洙의원

- 현재 네 의원께서 소방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략 우리들이 알았으니까 서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합시다.

◇消防署長

- 소방서장으로써 간단한 소감의 말씀들이고자 합니다.

이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목포시에서는 큰 불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대에 비하여 이렇게 건수가 없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소방서라는 것은 불만 끄는 소방서가 아닙니다.

불이 나면 물론 끄지만 물이 없을 때는 파괴 공작도 합니다.

그리고 불이 안 나도록 사전 소방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갑자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1년 365일을 긴장된 상태로 지내며, 재정난이라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음

◇孫白洙의원

- 소방세 문제가 논의되니까 화마도의 부산 일이 생각됩니다.

불이 하도 나싸서 불의 마에드운 부산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포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두리 동에 시설을 증가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방 시설을 변두리 동을 중심으로 함과 동시에 13만 시민의 공공 복리 증지에 주력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

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林一男의원

- 지금 대체적으로 보아서 질문을 하고 또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2, 3독회를 생략하고 통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합니다.

※ 장내 소란

◇金永完의원

- 林一男의원께서 질문을 하였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까.

(중간 소란)

앞으로 소방대 재산은 사유로 할 것인가? 경찰국 재산으로 할 것인가? 또 한가지는 지금 그간에 인사 문제가 떠돌고 있는데 소방대원은 어디까지나 기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른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議長

- 답변하여 주십시오.

◇消防署長

- 인사 문제에 있어서 지금 말씀이 있었는데 금반 실은 의용소방대원을 100명으로 감원하라는 명령이 있어서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간부급 이동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 문제는 목포소방서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국장 명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에서 소방차가 40대 도입되는데 목포에도 틀림없이 1대 배당 받을 것을 확신하며, 타시에서는 소방세를 규정을 초과하여 부과하였다는 등 이야기가 있었음

◇金永完의원

-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소방세는 시비에서 나온만큼 이것을 종전과 같이 경찰국 재산인가? 또는 시유 재산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이 문제는 여러가지로 답변이 곤란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 장내 소란

◇消防署長

- 물론 시유 재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林一男의원

- 제가 물은데 대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저는 호별세 100분지 20을 전반적으로 부과하게 되었는데 제 의견으로는 혜택을 보는 곳과 보지 못하는 지역을 구별해서 부과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消防署長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재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金京炫의원

- 아까 孫白洙의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동의에 가부를 물어 주십시오.

※ 장내 소란

◇議長

- 孫白洙의원의 동의는 이 소방세 조례안을 무수정으로 통과하자는 동의에 재청, 3청까지 있었습니다.

◇林一男의원

- 역시 이 조례는 여기서 통과만 된다면 내일부터 실시하여 전체로 시민에게 부과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합니다.

또 자치제를 실시 함으로써 조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통과되면 앞으로 3년간이나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조 대체 토론을 마치고 제2독회로 들어갈 것을 개의회합니다.

◇議長

- 개회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없었음)

※ 장내 소란

◇金永完의원

- 3개년간 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년간에 무슨 일을 할 수 가 없으니 3년 동안에 무슨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만에 한번씩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나 한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지방의 실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요?

(표결에 부쳐요, 하는 이 있음)

※ 장내 소란

◇議長

- 12명이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렇게 쉽게 해서 쓰겠습니까?

◇鄭應杓의원

- 지금 소방세 관계 조례가 두 건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있어서 호별세의 100분지 20, 가옥세 10분지 100, 자동차세 100분지 30으로 해서 실지 부과 한다면 거기 차가 있습니다.

※ 장내 소란으로 속기 불능함

※ 장내 소란으로 林一男의원 발언 속기 불능

◇議長

- 동의에 찬성이 있었습니다.
- 가하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 12명중 가 11표로 가결 되었습니다.
- 그러면 그 다음 세울 결정입니다.
- 이 세울 결정안에 있어 가지고 심의하여 주십시오.

◇金南鎭의원

- 總務課長에게 말씀 드립니다.
- 여기 제출된 세율에 의한 호별세,가옥세, 차량세를 포함한 전액이 얼마인가?
- 또 소방서에서 현재 금년도 충분한 예산은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總務課長

- 소방세율을 호별세의 100분지 20으로 하고 가옥세는 100분지 20, 차량세는 자동차에 대한 100분지 20으로 한다면 역시 소방서의 목적세는 지금 현재 잠정 조치로는 소방서 운영에 최소한도 염출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작년도 세면에 의하면 당초 3,486,000환을 부과하여 가지고 200만환 가량 징수하고 미수가 15,60만환 있으며, 잔고가 2,3만환 있습니다.
- 이것은 쓰고 남는 것은 아닙니다 만은 그리고 금년도에는 300여만환 되는 것 같다는 요지의 답변이 있었음

◇金南鎭의원

- 그러면 1955(4288)년도의 소방서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 4,50만환으로 사업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 간단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消防署長

- 이것 47만환 가량 필요합니다.
- 그런데 수조하나에 15만환 세웠는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할 것입니다.
- 백석 정도의 수조하나 파려면 100만환은 들어야 할 것입니다.

◇鄭應杓의원

- 이 소방세는 어디까지나 전체 목포시민의 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목포시민을 대표해서 나온 시의원으로서 이 전체 목포시민에게서 거출한 목포 소방세를 참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참으로 목포시민을 위하여 잘 써지고 있는가? 안쓰고 있는가? 하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납부할 의무만 있는가? 하는 내용을 알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징수한 340만환은 참으로 우리 목포시민을 위하여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하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무 내용을 알기 위하여 목포시 의회에서 소방서에 대한 사무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실한 내용을 알기 위하여 감사할 필요가 있는데 목포소방서장에게는 이 예산 집행 사항을 저희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는가?

또 금년도 말에 실시되는 감사경에 넣어서 받을 의향은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署長

- 언제든지 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林一男의원

- 조례가 이미 결정되고 있으므로 해서 1955(4288)년도 소방세 세율 결정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 林一男의원께서 1955(4288)년도 소방세 세율 결정안에 있어 가지고는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재청이 있어 성립되었습니다.

◇陳福春의원

- 아까 여러분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소방세 세율을 통과하는 동시에 각 분단을 써 배치되어 있는 의용소방대는 어떠한 도움이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이 의용소방대에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면을 표를하여 시의원에게 나누어주기를 바랍니다.

◇金永完의원

- 이것은 앞으로 별도로 예산이 나올 것입니다.

※ 장내 소란

◇議長

-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라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가 8표, 11명중 가 8표로써 가결 되었습니다.

◇金永完의원

- 다른 것이 아니고 전반 의회 때 공설운동장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그 후 행정 당국과 협의하여 금융조합, 조흥은행, 중매인과 같이 시영 가옥 전체를 감정하여 전부 1건 서류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사정하는 도중 최근에 삼학도예를 가 보았더니 저쪽 중간에 방파제가 있고해서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한번 어떻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다음날

(상의 하십시오, 하는 이 있음)

오늘 회의라도 끝나면 삼학도를 의원들이 가서 봅시다.

그러면 내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정 금액을 말씀 들이겠습니다.

목포금융조합 11,447,620환, 조흥은행 8,491,900환, 중매인 84,349,850환입니다.

이것이 사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장소만 결정되면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다음 속개되는 날 가서 봅시다. 하는 이 있음)

◇議長

- 그러면 점심이 준비 되었으니 점심 먹고 하십시오.

(아주 끝마치자고 하는 이 있음 전원 찬동)

그러면 그 다음 목포시 도살료 사용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여 주십시오.

◇孫白洙의원

- 제1조 1항, 2항, 3항을 낭독한 다음 제3항의 250환을 70환으로 하였으면 하겠으나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 장내 소란

◇金昌賢의원

- 본 조례는요 역시 광주, 목포를 비교한다면 광주를 따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포는 소비자가 적은 관계로 광주 보다 올라야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하자는 동의에 찬성합니다.

※ 장내 소란

◇議長

- 이의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목포시 중앙 도매시장 사용료 및 관리조례 개정안입니다.

※ 장내 소란

◇明南喆의원

- 설명들을 필요 없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전원 찬동 만장일치 가결

◇李文吉의원

- 鄭應杓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주의하는 발언은 장내 소란으로 속기 불능함

◇議長

- 좋은 말씀 많이 하여 주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주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써 폐회를 하겠습니다.

일사천리 격으로 통과하여서 감사합니다.

제38회 제3차 임시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1. 일 시 : 1955(4288)년 6월 20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1. 출석의원 : 14명

朴贊圭, 明南喆, 金京炫, 金八用, 李文吉, 李福柱, 金慶禧, 李在洪,
金子洪, 吳世一, 金永完, 林一男, 金南鎭, 李小圭 각 의원

2. 불참의원 : 7명

金三星, 陳福春, 鄭應杓, 文宅鎬, 金吉煥, 孫白洙, 金昌賢

3. 출석한 공무원

市長 및 各 課長, 木浦市 教育監 및 庶務課長

4. 개회선언 : 議長

(오전 10시 35분)

5. 보고사항 :

1. 제38회 1차 회의록 낭독 통과
2. 제38회 제2차 회의록 낭독 통과
3. 판자집 철거 건의문 발송 경과 보고
4. 각 분과 위원회 회의 상황 보고

◇李文吉의원

- 문교사회분과 위원회 회의상황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음

◇李在洪의원

- 산업분과 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음

◇吳世一의원

- 내무분과 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음

※ 오전 10시 55분 李小圭의원 참석

※ 오전 11시 金南鎭의원 참석

◇ 金永完의원

- 국채문제에 대하여 긴급 동의를 제기 하였던 바 본 건 시장으로부터 내용 설명이 있는 후 취소하였음

6. 부의안건

◇ 金子洪의원

- 1954(4288)년도 추가개정 예산안에 대하여 금후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도록 하는 어떠한 조건으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하였을 것이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 明南喆의원

- 내무위원회에서 어떠한 조건부로 통과한 이 조건부를 철회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에 첨가

(동의집 金子洪의원 수락)

표결 결과 재석 14명중 11명 가 가결

◇ 李在洪의원

- 각 의원과 재무과장간에 징세 장려비에 대하여 질의응답이 끝난 후 본 안 분과 위원회에 회부할 필요 없이 추가분 그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 결과 재석 14명 가 전원 찬동

※ 오물 소제 수수료 조례 개정 조례안의 건

◇ 金永完의원

- 본 건 각 분과 위원장에게 심사 숙고하여 차기 의회에 보고할 것을 동의

◇ 明南喆의원

-본 건 혜택을 받은 구역은 아무런 혜택을 못받은 구역에 있어서 공평치 못하니 구역을 변경할 것을 재 개의

◇ 李小圭의원

- 본 건 문사에서 연구 검토 결과 현상 유지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여 본 회의에 회부한 것이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개의

◇ 李福柱의원

- 개의에 찬동 발언이 있었음

◇ 金南鎭의원

- 본 건 제2조 3항 160환을 100환으로 인하 하였는데 이것은 원안 160환으로 통과할 것을 개의에 첨가

(개의집 수락)

표결결과 재개의집 재석 14명 중 가 3표 부결

개의집 재석 14명 중 가 11표 가결

◇ 議長

- 휴회선언(호우 1시 10분)

◇ 議長

- 속개선언(오후 2시)

◇ 議長

- 회의록 서명 의원에 金八用, 金子洪의원을 지명

◇ 議長

- 본 회의에 있어 심심 검토하기 위하여 폐회할 것을 선언 (오후 2시 10분)

위 회의록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1955(4288)년 6월 23일

議長 : 朴贊圭

議員 : 金八用

” : 金子洪

作成者 書記 : 洪南植

제38회 제3차 임시회 목포시의회 속기록

◇ 議長

- 그러면 11명의 출석으로 성원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부터서 개의 하겠습니다.
제38회 제1차 회의록 낭독하여 주십시오.

◇ 書記 박찬대

- 제38회 제1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습니다.
(낭독이 있었음)
고작 낭독해드린 회의록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金京炫의원

- 의석에 앉아서 언제 내가 퇴석했어.
그런 기억이 아나는데 이 아래 상공회의소에서 이야기 한 것도 퇴석이요.

◇ 書記 박찬대

- 정식으로는 議長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이석할 때에 퇴석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 議長

- 그 때 자리를 떠났으면 퇴석으로 인정합니다.

◇ 書記 박찬대

- 그러면 제2차 회의록을 계속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낭독이 있었음)

◇ 議長

- 제2차 회의록에 있어 이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통과합니다.
다음 판자집 철거 건의문 발송 경과 보고입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 書記

- 말씀해 들이기 전에 전번에 주교에게 감사장을 발송하기로 되었는데 감사장이 되어있습니다.
(건의문 낭독 있었음)

◇ 議長

- 다음은 1954(4287)년도 목포시 일반 예산의 추가개정과 식량 특별회계 추가개정 예산을 각 분과 위원회에 회부하여 가지고 분과 위원회에서 심심 검토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자는 말씀이 있어 가결되어 가지고 그것이 전문분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다음 오물 소제 수수료 조례를 개정 하자는데 있어 가지고 그 안건을 분과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가지고 본 회의에 회부하자고 하여 각 분과 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회의 상황 보고를 하여주십시오.

◇ 李文吉의원

- 본 건 목포시 오물 소제 수수료 조례 개정안은 거반 본 회의에서 각분과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되어 본 위원회에서 여러가지로 논의하다가 일반 동에 자치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여 행정부에 일임하여 동장 회의를 소집하여 상의를 하기로 하여 권농일날 행정부에서 동장 회의를 소집하여 상의 결과 13개 동에는 할 필요가 없다 하여 10개 동은 할 수가 있다고 하였던바 그 다음 본 위원회에서 토의 결과 일단 수수료는 시에서 징수하나 청소 감독은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서 보안계장을 모시고 토의한 결과 동 자치적으로 맡길려면 역시 시에서 마필을 사주고 수차를 주면 시내 3개소의 오물 적재소에 거기까지만 끌어다주면 좋은데 아무리 생각하여도 동 자치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우리가 토의 결과 제2조 1항에 60환을 160환으로 개정하고 제2항에 각 학교소속 120환을 160환으로 하였으며, 제3항 160환을 100환으로 개정하였으며, 4, 5, 6, 7항 그 이하는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물 소제 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 결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사회사업비 보조에 있어 75만 환의 국고 보조는 부기란에 있는바와 같이 지금 현재 30만 환은 징병비로 이미 쓰고 40만 환은 조월 수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제에 있어서는 무수정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에 가서 보건비에 10만5천9백 환의 추가재정 예산은 기정 예산 10만9백 환에서 5천 환이 초과 되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증했습니다.

그것이 부기란에 의하면 꼭 적절히 사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승인없이 쓰고 개정 예산안에 상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분과 위원회의 보고를 마칩니다.

◇李在洪의원

- 산업분과 위원회에서 추가재정 예산에 대한 심의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용 양곡이 이번에 487석이 나왔는데 그것을 도매, 소매 결과 2,287,114환인데 이익금 48,030환인데 이것을 전부 분배하는데 48,030환을 그대로 소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吳世一의원

- 내무위원장 전반 본 회의에서 각 분과 위원회로 회부한 후 심의 결과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가 나온지 10일이 지나도록 각 의원께서 심심 검토하여 잘 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문교사회와 산업 위원회에서 넘어온 안전도 종합 심의 결과 별다른 이유없이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 안전을 심의하는데 여러분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징수 장려금 추가예산분의 내역표가 여러분에게 배부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반 회의 때 같이 돌려야 할 것인데 사무 당국이 착오로 말미암아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종합 심의한 건인데 세입면에 양곡 판매 이익금에 있어서 4

자를 3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신중한 토의 끝에 이 추가개정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믿고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 議長

- 다음 부의안건으로서 1954(4287)년도 제5회 목포시 일반회계 제2회 식량 특별회계 추가개정 예산의 심의를 그동안 여러날 여러 의원께서 심심 검토 하였을 것이며, 그 결과 보고가 있었고 하였으니 또 지금으로부터 이 안건에 있어 가지고서 축조 심의로 들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하여 주십시오. 심의하여 주십시오.

◇ 金永完의원

- 예산 심의로 들어가기 전에 이 국채 문제에 대해서 긴급 동의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장내 소란으로 중략)

이 국채는 국가 일임 사무인데 목포시에서는 모든 허가를 낼 때는 나오지도 않는 제7회 국채를 매각하고 있기에 목포시장으로써 그런 결정권이 있으며, 이 국채에 있어 가지고 미리 예금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국채법을 떠들어 보았더니 다행히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허가를 낼 때 시에서는 7회 국채가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모든 세금 때문에 시민들이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이 때 구태어 위법해서 제7회 국채 소화시키고 있다고 하니까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목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만약 이것이 위법이라면 재무장관에게 목포시 의회에서 건의문 내가지고 이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시장님의 임의로 한 것 같으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무슨 허가를 내든지 국채 대금을 한국은행에 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긴급 동의 제안자로서는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재청, 3청이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 긴급 동의에는 5청까지 있어야 하는데,
(5청이요, 6청이요, 하는 이 있음)
물론 좋은 말씀 하시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답변을 먼저 듣자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답변을 듣고 가결합시다.

◇ 總務課長

- 목포시에 확정 국채는 지금 현재 77%가 소화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에다가 책임을 매겨 소화한 것이 77%이며, 그 다음 한가지 방법은 정부에서 직접 재무부에서 취급하여 첨가 소화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세관 관계로써 외국선 구입 물품에 대해서 첨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직접 재무부에 보고하였으며, 이 소화액은 목포시에 들어 가지않고 우리 국가 총체적인 액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국채 증권은 한국은행에서 일괄해서 취급합니다.
(법적 근거만 말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국채 증권이 한국은행에서 6회분 국채가 전부 떨어지고 없고 해서 그 다음 도에 연락하였더니 그 때 도에서 지시하기를 증권이 없으니 각 개인 명의로 한국은행에서 구입하고 계속해서 추진하라는 통첩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금은 전부 3일전에 광주 한국은행에 불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계속해서 차후로도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서는 이것이 실질적인 문제로서 잘 실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4, 5일전에 이것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6회 국채, 7회 국채는 법적으로 보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 있음)

※ 장내 소란으로 이하 약

◇ 金永完의원

- 내가 전반에 시어를 샀더니 어느 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나오지도 않는 제7

회 국채가 나오면 중권을 주기로 하고, 국채 저금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공채나 법채상으로 보아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인데 한국은행에서는 국회에서 국가의 채무확정액을 결정한 후에 국채를 발행할 것인데 목포시에서는 그것을 임의로 하였다면 이것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 않을 것인가?

이것만 말씀하면 됩니다.

◇ 議長

- 그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확실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 市長

- 국채 문제에 있어서 간단히 답변 하겠습니다.

현재 목포시에서 소화한 액이 77%이며, 미소화가 23%가 되어 있어 방금 총무과장의 말씀과 같이 도로 수차 교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제 6회 국채는 채권이 없는 관계로 우선 개인명의로 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6회 국채를 7회 국채로 돌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단 몇 건 지나서 중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 李文吉의원

- 자리에 앉아서 다른 시나 다른 면에 같것을 우리 목포시로 갖아온다는 말 이어,

※ 장내 소란

◇ 議長

- 그러면 이미 이 건에 있어서는 도에서 그런 통첩이 있었지만 계속할 수 없다고 하여 이미 중지 하였다고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그런 방법을 취하여 주기를 진언하는 그 정도로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으로 6회 국채를 소화 하는데는 허다한 난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때 참 감개무량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점에 관대한 아량을 가져 주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의원 재무장관에게 건의 하자는 것을 취소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

습니다.

◇ 金永完의원

- 시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까 건의문 발송하자는 것은 취소 합니다.

◇ 議長

- 본 건은 여러분께서 아마 다 찬성하신 까닭에 그러면 그 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심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심의하기 전에 아까 내무위원장께서 종합 심의 결과를 보고 하면서 재무과에서 제출한 추가분은 지금 여기에 나온 숫자라는 것이 이미 우리 손에 와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하고 255만 환의 차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심의하여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세출부터 먼저 심의하여 주었으면 감사 합니다.

◇ 李在洪의원

- 내무위원회에서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이 추가분까지 심의 하였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 議長

- 심의 하였습니다.

◇ 李在洪의원

- 심의 하였다면 이것은 먼저 본 회가 끝난 후 결정된것 같습니다.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물론 동정 특별 회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만은 작년에 동정세를 받아서 도심지에서 변두리 동에 원조한다고 말을 하였는데 도심지 동에는 동정세가 많기 때문에 직원 봉급을 다 받았지만 변두리 동에서는 직원은 지금까지 5만원이나 3만원의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지 서기만 봉급을 받고 변두리 동에 있는 서기들은 봉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은 현상인데 여기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는데 금년도 말까지는 결코 동서기들의 제 보수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수는 어떠한 방안을 세우고 있는가?

참고로 알려 주십시오.

또 하나는 내무위원회에서 숫자 수정된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쳐주어야 우리가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議長

- 재무과에서 제출한 추가개정예산안의 추가분에 있어서는 수정할 숫자는 없습니다. 식량 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서 어떻게 프린트가 잘못되어 그것만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재무과에서 나온 추가분 여기에 이해서 예산안의 전체에서 아마 몇군데가 수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본 회의에 추가개정 예산을 제출한 후 재무과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참고로 심사하였으며, 오늘 정식으로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이 상정 되었다고 하면 순서가 있겠습니다.

◇總務課長

- 1954(4287)년도 각 동의 동정 특별회계 예산은 제2기분 호별세부터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그것은 총체적인 호별세의 범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동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차이가 없습니다.

제 1기분 호별세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잘 징수 되었으며, 그것이 잘 징수가 되지 않아서 역시 변두리 동에서는 대단히 곤란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점에 있어 각 동에서 체납자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재무과 경리계에서 차압처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들어오면 지불하고 법인세, 동정세가 45만환이 있으니 이것을 합해서 전반기 변동의 보수와 기타 재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확실히 좋을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아서 실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기분은 동자치제로 부과하여 가지고 징수중이며, 각 동의 그 징수 사항이 원활히 나가서 후반기에는 대개 원만히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반에 죽교 5구동과 용당동, 산정 3구동에 보조를 하기 위하여 이번 추가개정 예산에 동보조비로 25만환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더 가면 전반기, 후반기가 원만이 해결될 것입니다.

◇李在洪의원

- 이것이 25만환으로 부족하지 않는가?

또 차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징수가 되지 않을 때 만약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1955(4288)년도에 완전히 해결 할 것인가?

또 여기에 단체에 대한 보조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며, 또 이것은 시장의 권한으로써 어떠한 단체든지 보조할 수 있는가?

7만환을 개정안에 올려서 보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등등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完의원

- 산업과장에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농림부의 식량 정책에 있어 가지고 농림부장관은 미가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목포시에는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전반 신문에 의하면 배급제도를 부활한다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 이 식량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사람을 물론하고 밤낮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에 방출미를 방출하는데 이것은 확실한 사실인가?

또는 우리 목포시에는 천천히 오지 않을 것인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할 것인가?

이러한 점 답변하여 주십시오.

◇産業課長

- 실은 미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도에 전화로 연락하고 또는 직접 직원이 가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20만 이상의 인구가 있는 곳에 방출한다 또 그 후, 배급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락은 없습니다.

단지 도 양정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곡을 적어도 도내 4개 도시는 배급을 하도록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량 농가용으로 정조 400석이 우리시에 할당 되었으니 대상자를 엄격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도정 실정에 대해서 전기 사정 등에 언급 하였음)

◇明南喆의원

- 여기 세출에 과년도 지출이 감402,900환인데 말하자면 이것은 1953(4286)년도 채무 확정액으로 감 되었는데 이것을 왜 그 당시 청산하지 않았는가?
그 밑에 국민반장 휘장대 기타 잡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總務課長

- 방금 李在洪의원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1954(4287)년도 동정 특별회계 추가개정 예산 관계 이것 후반기분은 지금 현재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전반기에 대해서는 그 체납자 보고 숫자하고 현재 지출하지 않으면 안될 채무액이 같습니다.

그러니 한가지 유망점은 법인 동정세로써 해결될 것이라는 유망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극력 노력해서 전반기분도 청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될 때는 1955(4288)년도 일반 회계 추가개정 예산에서 지출하도록 할 것이며, 1954(4287)년도와 같이 그런 봉급을 주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대한 보조관계는 시장 권한으로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당시 채금 문제인데 이것은 번영회에서 채금한 30만환을 우리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니 만큼 이 30만환은 우리시에서 반환하기로 거반 의회에서 논의가 있어서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여기 예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만환이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작년도분에서 낼려 하였으나 역시 이자가 많기 때문에 7만환을 이번 추가개정 예산에서 낼려하고 있으니 이것이 통과만 된다면 전부 청산하겠습니다.

(이자가 7만이며, 너무 과하며, 왜 지금까지 갚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렇게 거액을 지출하게 하느냐고 하는 이 있음.)

◇金永完의원

- 목포 예산은 어디까지나 법적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결정할 때는 작년도에 지출하도록 결정하므로써 작년에 442,900환을 결산 당시에 본 회의에서 통과하였을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지출을 했다고 보는 것인데 오늘날 442,900환을 지출한 영수증
기타 내역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44만환의 지출 근거와 법적 근거와 감한 근거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總務課長

- 총무과장 답변 장내소란으로 속기 불능함

◇明南喆의원

- 1954(4287)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전부 수지 결산을 마쳐서 짤 것이며,
우리가 통과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그렇게 말씀한다면 즉 말하자면 시의원들은 들렸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李福柱의원

- 세출 의회비입니다.

우리 자체가 쓴 의회비입니다 만은 추가개정 예산 1,331,600환에서 속기사
를 월 6,000환으로 하여 4개월분 24,000환 하고 일반 잡비 576,000환인데 이
것 기정 예산에 비추어 추가개정 예산이 많아서 어디다가 어떻게 쓴 것인
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議長

- 이 의회비 60만환의 용처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總務課長

- 의회비 잡비 60만환 중 57만 6천환의 소용을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일일이
계수적으로 들어서 기억이 않나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데 앞으로 회계년도도 있고 해서 회수
가 늘어간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 과년도 지불을 또 말씀 하였는데 실지 말하자면 작년도 예산을 속
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하여서 작년도에 지출과목에 넣는데 지출 못
하였다하면 1954(4287)년도 수입이 부족해서 지출 못한 것은 채무확정액의
조서를 만들어서 그 높을 추측으로 하여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함

니다.

◇李小圭의원

- 세출 제 4항 토목비 도로 교량에 있어 기정 예산 435만환인데 추가개정 예산이 6594,900환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하였던 도로 이외 어떤 도로를 227만환이나 들여서 보수하였는가?

도 판자집 철거비 17만환이 계산되어 있는데 판자집 철거로 말하자면 하룬가 뜯다말았는데 즉 말하자면 뜯다가 짓다가 하는 판자집인데 이것에서 이렇게 17만환이 들었는가?

또 하루 비용인가?

판자집 철거비 도로 보수비 공사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建設課長

- 217만환이 증가된 것은 시장 뒷선 즉 금융조합에서 불종터까지이며, 갑자기 앞도로를 이번에 보수하려는 것이며, 판자집 철거비 17만환은 소모품대 즉 6월말까지의 자진 철거기간에 요 철거물이라는 표데기를 부치는 것과 노프 사창이 등에 사용된 것입니다.

◇金南鎭의원

- 세출 교화비에 있어서 잡비 13만 300환 이것이 경로회비로 나갔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물품은 집행부에서 나가서 그것을 구입한 것인가?

◇社會科長

- 노인 초청하기를 133명 그래서 그 분들에게 수저 제복 한벌씩을 드리고 그 물품은 사회하고 우리 사회과 직원하고 같이 샀습니다.

◇明南喆의원

- 노무 동원비에 있어서 4만환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쓴 것인가? 앞으로 동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것인가?

◇社會科長

- 이것은 일부 과목 유용한 것을 돌려 보내고 6월말까지에 있을지 몰라서 들

어 있습니다.

◇金子洪의원

-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종합 심의가 끝났고 그리고 여기에서 심의 도중에 별로 질문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이러니 저러니 핑계 대면 다 들어 맞습니다.

핑계 대면 오차가 없고 역시 이번 심의할 때 나온 말과 사후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 금후에는 사전 승인을 얻도록 어떠한 조건으로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통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렇게 알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議長

- 의원께서 이미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종합 심의도 마치고 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李文吉의원

- 동의에 재청하는 한 사람으로써金子洪의원은 다시 재무과에서 나온 추가분 예산을 전반적으로 통과할 것인가?

이것만 다시 상정할 것인가?

이 한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議長

- 그 추가분만 다시 상정 심의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明南喆의원

- 동의에 부연하겠습니다.

내무위원金子洪의원은 조건부로 이 추가개정 예산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한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 조건부를 철회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에 부언합니다.

◇議長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오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만은 거반 총무과장이 있을 때는 사후 승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승인을 가지고서 우리가 항상 논의하였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미 당에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논의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 다음에는 다시는 사후 승인을 받지 않고 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돈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부를 가지고서 말씀이 있었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신사적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金子洪의원

- 환영 하겠습니다.

◇議長

- 추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상정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였으니까 동시에 가결을 보아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회계만 가부를 물어 주십시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54(4287)년도 제 5회 중 재무과에서 나온 것이 제 6회가 될까요.

◇財務課長

- 제 5회에 대한 추가분이니까 알아서 하여 주십시오.

◇明南喆의원

- 추가예산 만을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30만원에 대한 이자가 과중하다는 이 있음)

◇總務課長

- 이 금액의 이자는 30만원에 대한 연 1분 5전 입니다.

그러니 1년이 지나고 보면 꼭 6만 얼마가 됩니다.

◇李在洪의원

- 몇 개월 전에 이 금 30만원이 시로 넘어왔는데 그 훨씬 앞에 이자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장내 소란

◇李小圭의원

- 자리에 앉아서 지금까지 안갠 이유는 무엇인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 이상하다.

◇議長

- 차후 감사 당시에 증빙 서류가 뚜렷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때 한번 보기로 하고 그 만큼 그런 정도 말씀하여 두십시오.
(표결합니다. 하는 이 있음)

◇議長

- 그러면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할 때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는 다시는 사후 승인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고 재청, 3청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무수정 통과에 가타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가 1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재무과에서 나온 징세 장려금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財務課長

-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이 있었음

◇議長

- 아마 이것은 지금 징수 장려하는데 6월말까지 이 추가개정 예산을 본 후 6

월말까지에 8,500만환이라고 하는 세금을 더 징수될 것이라는 복안이 튼튼한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 특별 장려비 255만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8,500만환을 더 징수하므로써 이 예산을 쓰겠다고 만약 더 징수 못 된다면 지출이 보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잘 심의하여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李在洪의원

- 6월 중 징수 예정액이 1,900만환이며, 앞으로 10일 밖에 남지 않는 6월에 그 액을 전부 징수할 수 있는가?

또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는가는 등의 요지 발언으로써 설명을 하였음

※장내 소란으로 명기 불능 하였음

◇金永完의원

- 제 자신도 여기에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로 조사한 바 있는데 이 서류는 당연히 5월 30일 현재로 되어야 할 것이며, 이 일반회계서와 같이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5월 30일에는 재무과는 재무과 소관, 총무과는 총무과 소관대로 서류 작성하여 부표를 만들어야 되는 재무과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서류가 있을 때는 부표를 부쳐주라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음

※장내 소란

◇財務課長

- 이 안이 늦어진 이유는 세무서에서 6월 중 소득 세액 보고를 늦게 받기 때문이었으며, 직원이 4차에 걸쳐서야 소득세 부과액을 알게 되었다는 요지의 답변이 있었음

◇金永完의원

- 재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추가개정 예산이 나올 때는 각과는 과대로 계획이 있고 또 추가개정 예산은 똑같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 납부에 있어서 꼭 직원들이 전부 징수한 것이 아니라 자진 납부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을 가지고 받아 드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떠한 추가개정 예산이 나올 때는 똑같이 나오도록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히 부탁드립니다.

◇李在洪의원

- 지금 여기에 225만환의 장려가 나왔는데 이 225만환이 개정 예산안을 낼 때는 무엇하고 그 후로 주게 된 것인가?

답변하여 주십시오.

◇財務課長

- 이 예산은 세무서에서 확실한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李在洪의원

-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발언 내용 속기 불능

(요지는 재무과 추가분제출에 대해서 일반 추가개정 예산과 동시에 제출하라는 요지였음)

◇金永完의원

- 방금 李在洪의원의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종전 예산을 낼 때 채무 확정액을 당연히 넘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지수로 남아 있는 이 세금을 6월말일까지 전부징수할 가능성이 있는가?

(장내 소란으로 중략)

그래서 앞으로 징수하는데 이 금액이 확실히 징수할 것인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 나타난 액을 본다면 앞으로 1일 60만환 정도 징수하여야 만이 목표에 달성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야량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財務課長

- 제가 꼭 이것을 전부 징수하겠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 수에 가까운 액은 징수할 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액이 큰 것은 세무서에서도 역시 그런 모양입니다.

◇李在洪의원

- 재무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안이 나올 때는 계수의 커다란 변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분과 위원회에 회부할 것 없이 추가분 그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 추가분을 그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물 소제 수수료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 안건은 각 분과위원회에다가 회부하였다가 아까 문교사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의 보고가 있었으니까 본 회의에서 토의하여 통과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작 심의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議長으로부터 오물 소제 수수료 수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明南喆의원

- 제 2조 9항을 낭독 한 다음, 정기적인 처리와 처리를 요청할 때의 처리가 있는데 이것은 정기 처리는 대체 어느 때를 말한 것입니까?
또 오물 소제 수수료를 개정함으로써 오물 처리를 잘할 것인가?
또 처리하지 못할 때 재무과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李福柱의원

- 明南喆의원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실은 말을 압드릴려고 하였으나 장시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 드립니다. 방금 호별세 등급에 의해서 조정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만약 이제 오물세를 징수한다면 유달산 저 봉대에 있는 집에도 적용될 것인가?

또 오물 처리를 하지 않는 동에도 적용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십시오.

◇社會課長

- 정기는 동별로 정해서 있는 날짜를 말한 것이며, 부과율은 처리 구역에 한해서 부과할 것이라는 요지의 답변이 있었음

◇李在洪의원

- 지금 이 조례안은 문사회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심의하여서 본 의회에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안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두리 동에서는 오물 소제 수수료를 부과만 받고 실지 오물의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는 절대로 반대하면서 본 의원의 의견은 동자치제로 메기기로 할 것을 제 의견으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돌아간 형태를 보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은 이상이 저의 복안입니다.

◇議長

-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심심 검토한 결과 동자치제로 메긴다면 오물이라고 하는 것이 각 처에 쌓여 가지고 전국적으로 큰 수치를 할 우려가 있습니까 좌우간 현상 유지라도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견지에서 수차에 걸쳐 심의한 결과 몇 몇 조항을 수정하여 가지고 본 회의에서 회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동자치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교 사회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李文吉의원

- 李在洪의원의 말씀도 옳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연구한 결과 동자치제로 한다면 동민이 귀찮을 것 같아서 현상 유지라도 하기 위하여는 시에서 하지 않고는 안되겠다 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 사무가 주관은 시청이나 감독은 서에서 하기 때문에 동민들이 훨씬 괴로울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3개월에 적어도 4명의 인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李在洪의원

- 지금李文吉의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물세를 60환 부과해서 겨우 4만환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과해 가지고 받지 못하는데 이것을 구태여 조례에 부치고 뭇할 필요가 없지 않소

◇金永完의원

- 오물 소제 수수료 때문에 변두리 동에는 커다란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은 중앙동대로 애로가 있으니 여기 지금 현재 아무리 논의하여도 해결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냉정히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분과 위원장께서 심사 숙고해서 차기의회에 보고할 것을 동의합니다.

◇李小圭의원

- 오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물세 문제에 대해서는 李在洪의원의 말씀과 같이 부과를 하여도 받지 못한 현상이니 저 역시 오물세 조례를 개정하여 부과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 이것 뿐만 아니라 허다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물 소제는 정당 시청 소속입니다 만 대통령의 특별 분부로 경찰서에서 감독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내 소란으로 중략)

문사위원회에서 연구 검토 결과 현상 유지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여

본회의에 회부한 것이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개의를 합니다.

◇明南喆의원

- 제 의견은 해당 구역을 다시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적세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게 선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물세를 납부는 하나 1년이고 2년이고 오물 한번 처낸일이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혜택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하여 오물세를 낼 것입니까?

그러니 유명무실한 하등의 혜택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오물세를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구역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재 개의 합니다.

◇議長

- 그러면 동의를 있었는데 동의는 이 안건을 좀더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분과 위원장으로 한번 잘 검토 시키게 하였으면 하겠다는 동의였습니다.

그 동의에 재청있습니다.

◇李福柱의원

- 예, 문교사회 위원회에 한 사람으로써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사 위원회 심의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미안합니다 만은 일단 문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 회의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심중히 검토하고 또 보고가 있었고 또 따라서 본 회의에 상정해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통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만을 본 회의에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교사회분과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다시 각 분과 위원에게 넘긴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목포시는 때때로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장내 소란으로 중략)

그런 면에 비추어서 이것을 결정하도록 표결할 것을 재 개의 합니다.

(찬성이요. 하는 이 있음)

(재 개의회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개의회가 아니라 개의회에 참가합니다.

◇金南鎭의원

- 문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안대로 통과하자는 개의회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문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써 회의 도중에 사사로 퇴장하여서 모르겠습니다 만은 여기 제 2조 3항에 있어서 올릴려면 일률적으로 쪽 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2조 3항에 160환을 100환으로 인하하였는데 이것을 본안 160환으로 통과할 것을 개의회에 참가합니다.

◇李小圭의원

- 받겠습니다.

표결 하십시오.

◇議長

- 재개의 구역 변경 하자는데 재청이 있었습니까?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어 성립되었습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재 개의회에 가라고 하신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3표

(재 개의회로써 구역까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 있음)

◇社會課長

- 면제 구역은 용당동, 산정 1, 2, 3, 구동, 죽교 1, 5동이며, 그 밖에 동에는 반별로 되어 있습니다.

◇明南喆의원

- 유달동 같은데는 전적으로 부과는 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이나 처낸 일이 있습니까?

◇金京炫의원

- 자리에 앉아서 그렇습니다.
이 부근에도 한번도 쳐낸 일이 없어요.

◇議長

- 재 개의에 가라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가 1표

그러면 개의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라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가 1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소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조흥은행 목포지점장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여기 부의장실에 와서 계십니다.

(전원 찬동)

예, 거기에 가시고 안계십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써 끝내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부터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

(오 후)

◇議長

- 11명으로 성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목포시 공설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 것의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産業課長

- 축조 설명이 있었음

◇의장

- 그러면 오후 회의는 이것으로서 폐회 하겠습니다.

제 38회 제 4차 임시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1. 일 자 : 1955(4288)년 6월 21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 성립

· 참석의원 : 16명

朴贊圭, 吳世一, 李文吉, 金永完, 金子洪, 明南喆, 金昌賢, 金南鎭,
孫白洙, 金京炫, 金八用, 金慶禧, 林一男, 李在洪, 鄭應杓, 李福柱
각 의원

· 불참의원 : 5명

李小圭, 金三星, 陳福春, 文宅鎬, 金吉煥

· 참석한 공무원

市長 및 各 課長, 木浦市 教育監 및 教育廳 庶務課長

4. 개회 선언 : 議長 (오전 10시 25분)

5. 보고 사항

1. 목포시 급수 긴급 조치의 건

(가) 시장으로부터 급수 사정과 해결책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음

※오전 10시 26분 林一男의원 참석

※오전 10시 40분 李在洪의원 참석

※오전 10시 50분 鄭應杓의원 참석

◇金永完의원

- 노임 문제에 있어 대한노총과 일반 업자와의 사이에 여론이 자자한데 하역

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니 도저히 이대로 노임을 받아 가지고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하여 요금을 인상 하는데에 알력이 야기된 것이다.

식량이 될 수 있으면 목포로 도입되어야 한데 영산포로 가버린다면 목포시 발전에 커다란 영향이 있으니 노임문제에 있어서 문교사회 위원회와 산업분과 위원회에서 실지 조사하여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해결해서 하도록 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긴급 동의

(재청, 3청, 4청, 5청)

표결 결과 재석 15명 가 5표 부결

◇林一男의원

- 여기에 대하여 발언이 있었음

(속기록 참조)

※오전 11시 16분 李福柱의원 참석

6. 부의 안건

1. 목포시 공설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金南鎭의원

-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3청)

표결 결과 재석 16명 전원 찬동 가결

2. 목포시 식량 특별회계 폐지의 건

◇李福柱의원

- 식량 특별회계가 필요할 때는 다시 부활하도록 하고 본 안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3청)

전원 찬동 가결

3. 목포시 승용차 구입의 건

◇金昌賢의원

- 당시에 목포시 승용차 구입할 것을 동의
(재청)李文吉의원

◇明南喆의원

- 본 건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 일반 회계 심의할 때 결정할 것을 개의

◇金永完의원

- 본 건 기본 재산 및 중요 재산은 부의하여서 가결한다는 예산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니 구입할 것을 동의집에 찬성
표결 결과 재석 16명 중 가 9표 가결

1. 1955(4288)년도 목포시 일반 회계 일시차입의 건

◇李福柱의원

- 본 건 불가피한 사정이므로 연도내에 반환하기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3청, 4청)
전원 찬동 가결

◇市長

- 시정 연설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음
(속기록 참조)

◇李在洪의원

- 1955(428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수특, 동특) 세입출 예산 심의 본 안 심심 검토하기 위하여 각 분과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
(재청, 3청)
전원 찬동 가결

◇教育監

- 신년도 교육방침에 있어 교육내용의 시설 및 쇄신책에 대하여 천명하였음

1. 1955(4288)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의 건

◇孫白洙의원

- 본 건 전문분과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

◇鄭應杓의원

- 본 건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1954(4287)년도 목포시 세입세출 개정 예산을 겸하여 전문분과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에 참가

(재청)

(孫白洙의원 동의 수락)

전원 찬동 가결

1. 1955(4288)년도 제 1기분 교육세 부과에 건

본 건 예산심의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예산에 수반해서 분과위원회에 자연 회부된 것이라는 내용 발언이 있었음

2. 교육 위원회 일시 차입의 건

◇鄭應杓의원

- 본 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만장일치로 가결

◇議長

- 회의록 서명에 孫白洙, 金昌賢의원을 지명

◇議長

- 폐회 선언(오후 1시 3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날인 함

1955(288)년 6월 20일

議長 : 朴贊圭

議員 : 孫白洙

” : 金昌賢

作成者 書記 : 洪南植

제 38회 제 4차 임시회 목포시의회 속기록

◇議長

- 그러면 12명의 출석으로 성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부터서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으로 들어가서 시장님으로 부터 보고하여 주십시오.

◇市長

- 수도 사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수 관계는 제 3수원지에 14만톤을 제외하고는 아마 앞으로 이달 (6월말)말일까지 급수하면 전적으로 급수가 중지될 그 정도입니다.
현재 양수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올릴 때가 하루에 1,200톤인데 계속되는 한발로 인하여 지하수 부족으로 이제는 하루에 250톤 정도 양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후 이 달 말일을 넘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급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3수원지 물을 이제 주로 먹게 됩니다.
거번 의회 때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상업학교 옆에다 다시 동력 시설을 하여 제 3수원지에서 나온 물을 동력으로 끌어서 배수한다면 지금 현 상태로 4, 5일간은 계속할 수 있다는 기술적 서류상으로 검토한 결과 자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 날짜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 하면 1주일 내지 10일이 필요하며, 이 공사를 하는데 300만원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建設課長

- 공사 내역에 대해서 제 기계의 용비의 출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음

※그 후, 의원측과 건설과장간에 급수 문제에 대하여 일문일답이 있었음. 자리에 앉아서

◇金永完의원

- 방금 급수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앞으로 비가 오면 이러한 문제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안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돈을 들여서 일을 한다면 누구나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려면 일반에게 납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납득하여 행정부의 고충과 애로를 알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여기서 갑자기 논의하여 가지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물이 이만큼 고충이 심하다는 것을 시민이 앎으로써 여론화되어 여기에 대한 인식을 하여야 만이 이 문제는 가급히 해결될 것이며 차후 말이 없을 것입니다.

◇市長

-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2, 3일간 연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시설을 하였다가 곧 비가 오면 그 돈은 소모된 돈입니다.

그러니 그런 방법을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 3수원지 연선에 20개소의 공동 수도를 가설하여 각동에 전표제를 실시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물론 돈은 안듭니다.

(형편에 의거 중략)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 않아도 좋으니 연구하여 주십시오.

◇林一男의원

- 공사를 하여 가지고 물을 적게 배수할 수 있습니까?

◇建設課長

- 그런 수로는 격일제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議長

- 그러면 보고가 끝났으니까

(議長 긴급 동의요. 하는 이 있음)

발언 하십시오.

◇金永完의원

- 예, 지금 미가 관계로 항간에는 여러가지 말이 자자하기 때문에 식량을 운

반하는 대한노총하고 일반 업자하고 노임 조정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아서 양곡이 용댕이 까지 왔다가 다시 영산포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 자신 그 실정을 들어보았습니다.

대한 노총 어느 분의 말을 들어보고 기업측을 만나서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노임은 업주와 대한 노총이 협력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역장에서는 여하튼 물가가 올라가니 도저히 이대로 노임을 받아 가지고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종정에 25환하던 것을 30환으로 인상하므로써 알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식량이 될 수 있는대로 목포에 많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애로가 있어 가지고 영산포로 돌아간다면 목포 발전에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산업분과 위원회와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실지 조사하여 가지고 절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절충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해서 되도록 양곡이 목포시에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않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산업위원회와 문교사회분과 위원회로 위원을 구성하여 가지고 실지 조사하여 가지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 긴급 동의에는 5청까지 있어야 되는데
(재청, 3청, 4청, 5청이요. 하는 이 있음)
성립 되었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林 의원 말씀 하십시오.

◇林一男의원

- 방금 金永完의원의 긴급 동의가 목포에 반입된 미곡에 대한 운임 관계에 대하여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보아서 미가가 앙등하여서 하루하루 생활을 연명하고 있는 부두 노동자의 생활에 대단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한다면 미곡을 매매하는데 거기 중매인이 있습니다.

이 중매인이 1가마당 15환하던 것을 지금 30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운임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포에 상인들이 미곡을 가지고 가서 부산에다 놓고 위탁을 하는데 1가마당 150환 받는 것을 250환 내지 300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물가의 앙등에 수반해서 모는 부대비가 인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내에서는 물건을 운반하고 있는데 마차 임금에 대해서 가마당 10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두에서는 인상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고 또 자진해서 30환을 갖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두 양육부에서는 인상 문제를 1차 타협하고자 하였으나 노사간에 합석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 타협은 못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만나서 타협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장소는 제공하고 상공위원하고 노총 간부하고 타협하여 결정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 그런 정도입니다. 이 미가에 대해서 목포에 부대비가 많기 때문에 영암이나 용당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는데 부대비 자체가 많다는 것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목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자가 희생을 하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의 대가로써 받은 노동자의 노임은 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목포시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대비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결정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노임 문제는 오직 노사간에 결장할 문제입니다. 미가는 앙등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결국은 목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자만이 희생을 하여야 할 것인가 생각합니다.

어제도 상공회의소 위원이 직접 장사하고 있는 상인 7, 8명이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 하였는데 대개 오늘이라도 합의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긴급 동의 자체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노총측과 상공회의소측이 이러한 정도이라는 것을 이번 노임 문제에 대한 목포에 실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金永完의원

- 예, 林一男의원께서 아까 이 노동자만을 희생시켜서 미가는 올라가는데 노임 올리지 않을 것인가? 하는 말을 하였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노총의 교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러는데 노동자의 운임이 물가의 양등하였다고 해서 인상한다는 것은 경리학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 가치로써 조그마한 금 한 덩이에 1환하던 것이 1,000환으로 올랐다고 해서 임금도 그렇게 올려야 할 것인가?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농촌에서 금비를 하고 모든 노동을 해서 추수를 하여 놓는다면 1석당 1,400환의 적자를 내고 있으니 이 적자만으로 만 생각한다면 농업에 종사할 사람이 없지만 이것 적자라도 내고 지어야 만이 생활을 유지하여 나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노임도 물가의 양등에 따라서 무조건하고 인상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는 요지의 발언이었음

◇林一男의원

- 제가 말한 것은 이번 시의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사하는데 반대한 것이 아니라 노임을 인상하는 사명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어느 물건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하느냐 또한 가치의 한계를 무엇으로 결정하는데는 여기에 노동자의 노임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노임도 물가의 양등에 수반해서 인상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이었음

※장내 소란

◇議長

- 요는 노임을 조정하자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타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신년도 예산도 상정되어 있고 긴급동의가 제기 하였으니 산업과 문사위원회로 그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였으면 하겠다는 말씀이니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의장 발언 주십시오. 하는 이 있음)

말씀 하십시오.

◇金京炫의원

- 지금 긴급 동의를 나왔는데 물론 문사나 산업분과 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간접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방금 임일남 의원으로부터 목포의 실정 그대로를 말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초급히 해결할 문제가 않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위원이 개입한다고 해서 이 일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면 좋으나 물론 그렇게 않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 3일 경과되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양 위원회에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을 간섭하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급하지 않는 긴급 동의는 부의안건으로 들어가서 안건을 해결하여 놓고 제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론으로는 여기서 간단히 해결할 수 없으니 2, 3일 경과하여서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하였으면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金昌賢의원

- 장내소란으로 인하여 확실히 기록할 수는 없으나 金京炫의원의 발언 요지와 자기의 들은 바의 견해가 틀리다는 요지의 발언이었음

즉 金京炫의원의 발언은 문사, 산업에서 해결하자는 요지인데 金昌賢의원의 들은 바는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정을 조사하여 해결 할 수 있으면 해결하자는 요지이었음

◇鄭應杓의원

-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鄭應杓, 金永完의원 발언을 속기 불능

◇林一男의원

- 실지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목포에 여론이 좋다고 하지만 여론을 악화시키고 돌아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 공장 주인은 노조 간부에게 개

인으로 자기 공장에 들어온 것을 싸게하여 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염전업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으로 이하 기록 불능)

◇議長

-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예, 金永完의원의 긴급동의에 가타고 생각하신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가 5표로 부결되었습니다.

◇社會課長

- 잠깐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일 노임 문제에 대해서 노조 간부와 상공회의 간부, 시청 간부들이 시에
서 모여가지고 타합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입니다.

◇議長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포시 공설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입니다.
심의하여 주십시오.
심의하기 전에 제안자 측 설명하여 주십시오.
(제안자 측 설명 어제 들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도 참석하지 못한 분이 계시니 대략 설명하여 주십시오.

◇産業課長

- 축조 설명이 있었음

◇金南鎭의원

- 본 공설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종전에 조례가 너무 짧으니 지금
현재의 물가 시세에 비추어 마땅히 본 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 3청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 현재의 물가에 수반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재청, 3청까

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전원 찬동 가결

그러면 그 다음 목포시 식량 특별회계 폐지의 안입니다.

제안자 설명하여 주십시오.

◇産業課長

- 축조 설명 있었음

◇鄭應杓의원

- 그러면 현재 식량 특별회계의 재산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産業課長

- 식량 특별회계의 재산은 배급소 건설이 있고 현재 동직원에게 입체된 것이 18만환 있고 과거 일반회계 차입이 50만환 정도입니다.

그저 저울이 4개 배급소에 하나씩 해서 4개 또 기타 비품이 있습니다.

◇鄭應杓의원

- 그러면 만일 계속 된다면 배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産業課長

- 일반 배급에 한해서는 금융조합에서 집접 취급하였으며, 동직원과 시직원은 식량 특별회계에서 취급하고 있었는데 7월부터는 이것이 없을 것입니다.

◇鄭應杓의원

- 사업장 장내 소란으로 속기 불능

※장내 소란

◇議長

- 그런데 요즘 신문 보도에 의하면 서울에서는 식량 배급이 시작되었다는데 그런 때는 다시 부활할 용의가 있습니까?

◇産業課長

- 그것은 식량 특별회계가 폐지되므로써 식특의 관리 재산은 일반회계에 편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 일반회계에 사업장으로 혼합되지 않을까 합니다.

◇李在洪의원

- 지금 현재 긴급 방출미대 미납분은 어떻게 하였는가?

◇産業課長

- 지금 현재 2만환 미납이 있는데 그것만 청산하면 됩니다.

◇李福柱의원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식량이 정부에서 시에 위촉된 경우가 있을 때는 이 식량 특별회계가 필요할 때는 다시 부활하도록 하고 이번 폐지안은 그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이요. 3청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 李福柱의원으로부터 필요시에는 다시 부활할 것을 전제로 하고 통과하자는 동의에 재청, 3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겠다는 안건입니다.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總務課長

- 차 구입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明南喆의원

- 승용차 구입비가 별다른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할 때 심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 안건으로 들어 갔으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議長

- 그러면 본 건은 각하의 형식을 취할까요?

(보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각하도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總務課長

- 중요 재산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이것을 사느냐? 안사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류하는 이 보다 통과하였으면 하겠습니다.

◇議長

- 재산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시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심의하여야 좋을 것인가? 어떤가를 생각하여 봅시다.

좌우간 자동차를 사기로 우리 의회에서 가결을 보느냐? 어떠냐? 또한 예산 통과후 결정을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李在洪의원

- 이것은 예산에 수반한 것이니 예산을 통과시킨 후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자동차 구입비가 200만원인데 지금 그런 쫄차 1대를 구입하는데 난바까지 붙은 것을 정부 보유비로 산다면 6,70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미군들이 부산으로 철수하고 있으니 그네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것을 팔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차는 100만원 정도면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 쓸 차는 중앙에 교섭해서 보유불 1,000불이나 1,500불을 사면 좀 싸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金昌賢의원

- 總務課長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개수의 재산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승인을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차는 예산이 통과 되므로써 사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타 지방에 비교한다면 목포보다 작은 순천, 여수 같은데도 자동차가 1대 이상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포시에는 찢차 1대도 없어 외빈이 오면 이리 저리 차를 빌리러 다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이 재산하나 구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하는이 있음)

◇鄭應杓의원

- 예, 지금 방금 말씀이 있고 우리가 실지 예산 심의에 들어가서 심의하자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포시의 실정에 비추어 찢차 1대나 2대 정도 사는 것은 좋으나 이와 같이 증대한 안건을 제 38회 1차 회의 때 승용차 구입안을 본 회의에 제출하였다가 총무과장이 결국은 이것을 삭제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것은 도대체 시의원들을 데리고 무슨 장난인지 시의원들을 노리개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엇그제 본 회의에 상정하였다가 승용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는 일단 취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을 오늘 또 내놓는 집행부의 자체를 볼 때 그 자체가 확실한 주동이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산 심의할 때 논의합시다.

◇總務課長

- 자동차 구입 보류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明南喆의원

- 이 자동차 구입비 1955(4288)년도 예산이 안들어 있고 별도 예산이라면 모르겠으나 1955(4288)년도 예산에 들어있으니까 일반 회계 심의 할 때 결정할 것을 개의합니다.

(재청이요, 3청이요 하는 이 있음)

◇李文吉의원

- 장내 소란으로 확실한 기록은 불능하나 예산 심의에 앞서 본 안을 토의 하자는 요지이었음

◇金昌賢의원

- 방금 예산 심의할 때 심의 하자는 개의를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별도로 계획이 있다면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지금 꼭 통과하여 가지고 자동차를 사야할 것인가? 또는 물가 지수에 따라서 살 것인가?

또는 지금 곧 사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기에 있는가?

답변하여 주십시오.

◇總務課長

- 예산이 통과되면 곧 살 수 있습니다.

◇林一男의원

- 승용차 1대를 목포시에서 구입한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고 잠깐 보류해서 예산 심의할 때 통과하자는 개의를 있었습니다.

나는 개의 안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승용차를 산다고 통과만하였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이 있어야 삽니다.

(이하 소란)

※장내 소란

◇李福柱의원

- 장내 소란으로 명확한 기록은 못하였으나 중요 재산을 구입할 때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앞으로 삼학도 공사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동분서주 하려면 차도 필요하니 예산과 분리해서 심의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심의 하였으면 하겠습니다.

◇金永完의원

- 지금 현재 예산을 심의할 때 심의할 것이냐? 별도로 심의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시의 기본 재산 및 중요 재산을 구입할 때는 미리 부의안건을 가결하여 가지고 예산 검토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자치법에 예산 심의할 때 혼돈해서 하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동의집에 찬성합니다.

◇鄭應杓의원

- 장내 소란으로 명확한 기록은 못하였으나 이와 같은 안건을 별려면 미리 제출하여야 될 것이며, 예산 심의하기 전에 나와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가 의사일정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안을 내 놓는다는 것은 행정부의 무능한 탓이라는 요지였음
(표결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 있음)

◇議長

- 표결 하겠습니다.
개의 집에서 예산 심의와 동시에 본 건을 심의하기로 하자는 개의입니다.
그리고 동의집은 재산 구입하고 예산 심의하고는 분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재산 구입을 먼저 의회에서 가결한 그 다음에 예산 심의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의집 먼저 묻겠습니다.
개의에 가타고 생각하신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가 6표 입니다.
그리고 동의집에 가타고 생각하신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가 9표로 가결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1955(4288)년도 목포시 일반 회계 일시 차입건 입니다.
이것 제안 이유 설명하여 주십시오.

◇總務課長

- 1955(4288)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연도초에 세입이 원활히 될 것을 상상하고 필요시에는 시중 은행에서 차입하겠다는 요지의 설명이 있었음

◇金永完의원

- 제안자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500만환이라는 승인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市長

- 일시 차입 금액의 한도 500만환은 작년에 1,000만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

러나 실지 작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2천 5백 60만환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
다.

그런 실적에 의해서 금년에는 500만환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인데
이 금액은 세금 납기에 징수가 원활히 한다면 승인은 받았지만 사실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납기 관계로써 중간에 2, 3개월의 공간이 있다면 예산 집행상 공간
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환을 집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쓰는 달도 정해지지 않고 1년간이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연
도말이나 연도초나 지불할 수 있습니다.

◇李福柱의원

-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 내용 잘 알았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불가능한 사정으로 일시 차입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500만환 차입에 찬성하고 그래서 1955(4288)년도 내에 반드시
반환할 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3청, 4청이요.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議長

- 예, 아마 이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원 가결을 보았습니다.

전원 찬동에 그 다음 1955(4288)년도 예산서를 제출하여 놓고 시장님으로써
1955(4288)년도에 어떠한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
다.

이리 오셔서 해 주십시오.

◇市長

- 시정 연술 생략 원문 참고

◇議長

- 예, 신년도 예산 편성 계획에 있어 간곡한 시정 방침에 대해서 감탄의 말

숨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앞으로 우리는 목포시를 위하여 행정부와 같이 따뜻한 악수를 하면서 용약 매진하여야 할 것을 각오합니다.

우리가 신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감개무량 합니다.

이제 우리 21명 초대 의원들은 이것이 아마 최종 심의이고 결산 심의인 것 같습니다. 이 심의에 있어서는 자아를 버리고 대승적인 견지에서 심심히 심의하여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李在洪의원

- 지금 시장님의 시정 연설을 듣고 1955(4288)년도 사업은 대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곤란한 것은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물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의하면 대체적인 해결책은 들어 있으나 물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은 좀 나쁘더라도 괜찮지만 첫째는 물 문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산면과 건설은 실지로 3, 4할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장님에게 부탁할 것은 목포에서 제일 급한 것부터 시작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업보다도 건설사업을 꼭 예산 그대로 집행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억 7천만원이라는 거대한 액수는 이 자리에서 심의가 안될 것이니까 세세히 심의 검토하기 위하여 이 안건은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3청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분과위원회에 회부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감선생으로부터 1955(4288)년도 목포시 교육방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教育監

- 첫째, 교육 확충 정비, 둘째, 교육 내용의 연구쇄신, 셋째, 아동 체위향상,

넷째, 사회교육의 강화에 대한 이상과 같은 1955(4288)년도 교육 방치의 연설이 있었음

◇議長

-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전 회의는 끝내겠습니다.

점심 잠수세요.

(오전에 끝마칩시다. 하는 이 있음)

전원 찬동

◇孫白洙의원

- 교육감께서 민주교육 향상 원칙에 대하여 말씀이 있었고 또한 목포에 앞으로 1955(4288)년도 교육 행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일 반가운 것은 1년에 자연고가 1,000명 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큼 향학열이 점고하여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기준의 지시에만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어느 정도 목포시 교육을 자치적으로 노력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간단히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분과 위원회에 넘겨서 심의 검토하여 본 회의에 상정해서 이 교육 행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내 소란

※議長 어느 것을 통과하는 것입니까 하는 이 있음

◇議長

- 1955(4288)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거기에 제안 이유는 고작 교육감 선생께서 교육방침에 대한 연시가 있었음으로 그것으로 가름하기로 하고 심의 시작하기로 합시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孫白洙의원

- 인제 동의합니다.

지금 그 발언 다시 살려서 동의합니다.

◇鄭應杓의원

- 좀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만은 1954(4287)년도 목포시 세입세출 개정예산을 겸해서 전문분과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첨가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金永完의원

-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신문보도에 의하면 교육위원회 불법 소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목포 일보 그제 신문에 의하면 교육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았는데 교육위원회 자체가 소집하였다 하는데 위원장이 어떤 애로가 있었는가?
그 경과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市長

- 교육위원회에 관계된 무슨 보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3일 교육위원회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결제를 하였습니다.
단지 그날 제가 참석 못한 것은 병으로 출석을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 13일 회의가 16일 날로 속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등의 위법은 아닙니다.
그 당시 서무과장이 16일 날로 교육위원회가 있다고 하였는데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16일날 누가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습니까?
하고 묻기에 오늘은 없을것입니다.
하고 답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孫白洙의원

- 鄭應杓의원의 동의 첨가를 수락합니다.

◇議長

- 동의가 있어서 재청까지 있었습니다.
(3청이요, 4청이요, 5청이요, 하는 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1955(4288)년도 제1기분 교육세 부과의 건입니다.

◇ 教育監

- 제1기분 부과율은 예산 심의가 결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에 수반해서 분과위원회에 회부될 것입니다.

◇ 議長

- 그러면 교육위원회 일시 차입 건입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 教育監

- 축조 설명이 있었음

◇ 鄭應杓의원

- 현재 공사는 착공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입하게 될 것이며, 또한
본 회의에서 특별 부과금을 6월말까지 체납처분하지 말도록 하여서 공사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00만환은 단기간에 차입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것을 원안대로 통
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일부터 있는 각 분과위원회별 일정표를 배부해 드리니 별도
통지서가 없더라도 그날그날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렇게 많은 안건을 일사천리적으로 가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산회하겠습니다.

제38회 제5차 임시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1. 일 자 : 1955(4288)년 6월 29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1. 참석의원 : 13명

朴贊圭, 明南喆, 孫白洙, 金京炫, 李文吉, 鄭應杓, 金慶禧, 金三星,
李在洪, 金子洪, 吳世一, 金永完, 金八用, 각 의원

2. 불참의원 : 8명

李小圭, 金南鎭, 林一男, 文宅鎬, 金吉煥, 金昌賢, 李福柱, 陳福春,
각 의원

3. 출석한 공무원

市長 및 各 課長

4. 개회선언 : 朴議長 (오전 10시 20분)

5. 보고사항

1. 제38회 제3차 회의록 낭독 통과

2. 제38회 제4차 회의록 낭독 통과

3. 각 상임위원회 회의상황 보고

(가) 산업분과 위원회 회의상황 보고

(나) 문교사회분과 위원회 회의상황 보고

(다) 내무분과 위원회 회의상황 보고

산업분과 위원장 불참으로 李在洪의원 당해 예산 심리 결과 보고에
이어 문 교사회 위원장 李文吉의원 및 내무분과 위원장 吳世一의원
으로부터 각 각 예산 심리 결과 보고 및 종합 심리 보고가 있었음

※ 오전 11시 20분 金昌賢의원 참석

6. 휴회선언 : 議長

(오전 12시 10분)

7. 속개선언 : 議長

(오후 1시 35분)

◇ 鄭應杓의원

- 부의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급수 긴급조치를 토의할 것을 동의.

(재청, 3칭)

표결결과 재석 14명 전원 찬동 가결

◇ 市長

- 현재 긴급조치에 대하여 다음 내용의 설명이 있었음

즉 현재 달산 수원지는 고갈 상태이므로 제3수원지의 물을 가압하여(상업학교 앞에서) 1,000톤은 달산수원지 계통 연산배수로 양수하고, 1,000톤은 제3수원지 계통 일본송 배수지로 양수하고 500톤은 제1수원지 계통 송수관으로 배수하여 자연 유하(流下)로서 각 각 급수할 것과 제2로는 제3수원지 계통에서 제1수원지 계통 송수관으로 절체하여 제1수원지 계통 배수관에 연결된 급수전을 각 동 별로 할당하여 배급제도로 급수할 것 제1안과 같이 공사를 실시한다면 300만환의 공사비가 필요하니 기채를 하여야 쓸 것이며 이상 2가지 안 밖에 없다.

양수를 하더라도 40일간 밖에 유지 못한다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음

◇ 金三星의원

- 본건 전표식으로 배수를 한다면 상당한 혼란을 야기 시킬것이니 제1안과 여히 공사를 실시키로 하고 300만환 기채할 것을 동의

(재청, 3칭)

표결 결과 재석 14명 전원 찬동 가결

◇ 李在洪의원

- 현하 곡가가 양등하고 있는데 각 신문 발표를 보면 춘천, 청주, 전주, 광주 등의 도시에 정부보유미를 방출한다는데 우리 목포도 타 시에 비교하여 인구도 많고 하니 본 의회에서 전라남도 지사, 중앙 농림부장관, 국회의장, 대

통령 비서실장에게 긴급 방출미를 방출하여 주도록 건의문을 작성하여 산업
과장 회의에 지참 상도토록 긴급 동의
(재청 --- 7청)

표결결과 재석 14명중 전원 찬동 가결

8. 부의안건

1. 1955(428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행정부와 약 1시간 질의 응답이 있었음

◇ 金昌賢의원

- 본안은 각 각 전문분과 위원회에서 심심검토한 것이니 원안대로 통과할 것
을 동의

◇ 李在洪의원

- 본안 중동시장 시설비 예산액 2,200,000환은 시민의 부담과 시설의 중요성
(타 공사에 비교)이 무 하므로 전 삭감하고 신설도로비 4,200,000환에서
2,00,0000
환을 삭감하고 수리 보수비 2,546,000환에서 1,000,000환 삭감할 것을 개의
(재청)

◇ 鄭應杓의원

- 본안 사무비(원안대로), 인쇄비 1,000,000환, 또 특별 판공비 520,000환, 소
모품비 1,000,000환, 그리고 소방비 소모품비 210,000환, 또 예비비에서 어느
정도 삭감하여 5,200,000환을 삭감하여 중동시장은 계획대로 예산 편성할 것
을 재개의

◇ 明南喆의원

- 본안 재산비, 비품비 2,700,000환을 삭감할 것을 재 개의에 첨가
개의집 수락
표결결과 동의집 재석 14명 중 가 9명 가결

2. 1955(4288)년도 목포시 동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안

◇ 金子洪의원

- 본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심 검토한 것이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결과 재석 14명 전원 찬동 가결

3. 1955(4288)년도 목포시 수도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 吳世一의원

- 본안 내무분과 위원장 오세일의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

◇ 鄭應杓의원

- 본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3청)

표결결과 재석 14명 전원 찬동 가결

◇ 朴議長

- 회의록 서명 의원에 을 지명함

◇ 議長

- 폐회선언(오후 6시)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1955(4288)년 7월 5일

議長 : 박찬규

議員 :

" :

作成者 書記 : 洪南植

제38회 제5차 임시회 목포시의회 속기록

(오 전)

◇ 議長

- 지난 21일 제38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오늘 속개하겠습니다.
- 그러면 13명의 출석으로써 성원되었습니다.
- 지금부터서 개의하겠습니다.
- 제38회 제3차 회의록 낭독 하겠습니다.

◇ 書記 박찬대

- 회의록 낭독이 있었음

◇ 議長

- 제3차 회의록에 이의 있으면 말씀하여주십시오.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 없으신 것 같으니까 통과합니다.
- 그러면 제4차 회의록 낭독하겠습니다.

◇ 書記 박찬대

- 회의록 낭독이 있었음

◇ 議長

-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이의 있으면 말씀하여주십시오.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 다음 그럼 상임분과 위원회의 회의 상황을 보고하여주십시오.

◇ 吳世一의원

- 산업분과 위원장이 연일 출석치 않으니 병환으로 만나오는가? 어째서 만나 오신지 사무국이나 그 밖에 내용을 아신 분 말씀하여주십시오.

◇ 書記 박찬대

- 실은 제38회 회의를 시작하기 1주일 전에 서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마침 부산서 편지가 왔다고 하기에 부산에 연락하여 의사일정과 안건을 전하였으나 그 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 議長

- 계속해서 金吉煥의원의 소재와 그 사정에 여하에 있었어도 탐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분과 위원장이 안 계심으로 제가 지명하였으니 나와서 수고하여 주십시오.

◇ 李在洪의원

- 産業委員長 李在洪의원과 文社委員長 李文吉의원과 內務委員長 吳世一의원 으로부터 각 각 회의 상황 보고가 있었음

◇ 議長

- 그러면 사무국에 오차로 숫자에 틀린 것이 부기에 문자의 오자가 많이 있으니 사무국에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書記 박찬대

- 오자 정정 낭독이 장시간에 걸쳐 있었음

너무나 여러 개소 정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의 두뇌를 피로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앞으로 사무국에서는 신중히 모든 문제를 취급하여주십시오.

의원들은 이러한 것을 정정할 시간도 없고 하니 다만 부탁할 것을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이 특히 주의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먹고 합시다.

(좀더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아주 점심 먹고 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부터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12시 10분)

(중식 시간)

(오 후)

◇ 議長

- 그러면 오전 회의에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1시 35분)

◇ 鄭應杓의원

- 지금 오후 예산 심의의 끝에 써 있습니다 만은 어제부터 듣는바에 의하면 지금 저수지 물이 떨어져서 오늘이나 내일 먹지 못한다는 그런 현재의 급수 제도를 변동하지 않으면 안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부의안건의 제일 끝에 있는 안건을 제일 먼저 검토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물이니 이 예산 문제는 오늘밤 내일밤 며칠이 걸리더라도 급수 문제가 제일 긴급하니 급수긴급조치 건을 먼저 토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3청이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 그러면 동의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습니다.

◇ 市長

- 적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9개월 동안 상당한 강우가 없는 까닭으로 급수가 미급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거반 의회에 말씀 드린바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각 수원지에 저수량은 26일 현재 제1 수원지가 3,914톤 그러나 이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3 수원지가 137,000톤인데 순전히 이것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4 수원지에 6,370톤 이것은 다소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달산리가 7,532톤 현재 양수가 하루에 300톤 그러면 현상대로 유지 하려면 7

월 5일까지 밖에 먹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거반 의회 때 보고와 같이 여러가지 각도로 강구한 결과 두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공사 착수의 두가지 방안 즉 하나는 제3 수원지 수도 연선에 공설 수도를 설치하여 동별 전표제를 실시한 것과 상업학교 앞에 인수 공사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그리고 3백만원의 공사비는 1955(428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요지였음

◇ 鄭應杓의원

- 지금 제 3수원지의 연도에다가 공동 수도를 가설하여 가지고 각 동별로 할 것과 또 하나는 강력한 인수를 하여 가지고 배수한다는 안 이 두가지 안 다 공사를 하려면 10일간이 요하하는데 그러면 10일 동안은 현재 주고있는 급수제도가 계속될 수 있는가?

말씀하여주십시오.

◇ 市長

- 7월 10일까지는 현상과 같은 급수를 할 수 없으나 지금 현재의 양에서 2,300톤 줄여서 주게 됩니다.

◇ 金昌賢의원

- 인수 작업을 할려는 발동기 구입 및 제비용이 300만원이 필요하는데 수도 특별회계에 예산이 서 있지 않으니 일반회계에서 수도특별회계에 어떻게 보조할 수는 없는 것인가?

말씀하여주십시오.

◇ 市長

- 오늘까지의 실정을 본다면 보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세, 도세가 원만히 된다면 연도가 넘어서 예산 조치가 된다면 조치하겠습니다.

◇ 李在洪의원

- 지금 일반회계 수도 특별회계를 뚝 떠나서 지금 각지에서 비가 오고있는데

목포만 비가 오지 않아서 목포에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있습니다.

그러면 목포에 이렇게 중대한 긴급한 문제가 생겼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둘 수 없을 것입니까?

시장님께서서는 1차 정부에 가서 애걸을 한다면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시장님이 중앙에서 잘 노력한다면 좀 얻어 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 市長

- 지금 경기도가 200미리 이상의 강우량이 있고 목포뿐만 아니라 호남 일대에 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반에 본도 CAC처장이 내목하여 현지를 안내하여 달라 하기에 제가 안내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앙에 올라가면 목포에 실정을 호소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니 보고서를 작성하여 올려달라 하여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이야기하면 목포의 물 사정은 중앙 토목국에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과 부산에도 물 사정이 대단이 나쁩니다.

이런 부산 같은 시에는 수도관이 오래된 까닭으로 누수가 되어서 정부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으나 아직 하등의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호소는 한다면 고려하여 줄지는 모르나 거기에 대한 시급한 조치는 곤란하지 않는가 합니다.

◇ 李在洪의원

- 이번의 비가 중부 지방에만 온 것이 아니라 17, 8일경에는 부산 근방에도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생각으로는 시장님의 중앙에 가서 애걸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수도 공사를 할 때는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나가서 일을 한다면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하며, 중앙에 가서 목포 13만 시민이 물 때문에 대 곤란이라는 것을 역설한다면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참고 말씀드립니다.

◇ 議長

- 그것은 물로 좋은 말씀입니다.

시장님이 이번에 서울 갔다 오시고 하니 중앙에서도 목포의 실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金昌賢의원

- 이제 두가지 방법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였는데 300만환 공사와 일부 지역에 제3 수원지 연선에 대한 공설수도 시설도 곤란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비가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비가 온다면 얼마 정도이어야 원상 상태의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을려면 어느 정도의 우량이 필요한가?

말씀하여주십시오.

◇ 建設課長

- 달산리 수원지가 지금 현재 1,000미리 정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00만환의 금액이 들지 않으려면 200미리의 비가 내려야 하는데 그것도 장시일이 걸리면 효과가 적고 24시간내에 내려야 하겠습니다.

◇ 金子洪의원

- 지금 시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방안을 다 채택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앞으로도 한발이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으면 300만환의 시설을 해서 현상 유지를 한다면 앞으로 비가 오더라도 가사 그 물을 즉시 먹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15일 내지 30일은 물이 탁해서 먹을 수 없으니 근 1개월은 물 녹화에 시일이 요합니다.

그러니 내 생각으로는 이 두가지만 안 다 채택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建設課長

- 그것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우량이 많으면 2개월 동안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산의 약을 치면 3일내에 먹을 수 있습니다.

◇ 金昌賢의원

- 방금 시장님이 두가지 방안을 말씀하였는데 1항을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혼란을 일으킬 것이며, 또 중앙에 가서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시일이 걸리니 그것은 추후 하기로 하고 300만환을 기채하여 가지고 40일간 이라고 하는 그동안 유지해 가면서 공사를 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3청이요. 하는 이 있음)

◇ 鄭應杓의원

- 지금 목포시민들이 이 수도에 대한 관심이 아주 최고도에 달했습시다. 어제 들어온 말이 내일부터는 물이 않나온다는 등 또는 지금부터는 연동서 물이 나온다는 등 등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2개월간은 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실정이니 우리가 최후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1개월간 비가 안올 것을 전제로 하고 300만환의 공사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고충을 덜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동의에 찬성합니다.

◇ 議長

- 동의에 찬성 있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주십시오.

◇ 明南喆의원

-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명확한 기록은 못하였으나) 300만환 아니라 400만환이 들어서라도 공사를 하여야 하겠으므로 동의에 찬성해서 말씀이 있었음

◇ 議長

-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鄭應杓의원

- 공사를 하는데 10일간의 시일이 걸린다는 말씀을 하였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재 3,000톤 물을 받고 있으나 이 3,000톤이 떨어지는 일을 초래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한 현상 유지를 하면서 그동안 공사를 잘해서 계속해서 물이 오도록 철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하여 주십시오.

◇ 市長

- 아까 金子洪의원께서 1안과 2안을 다 채택할 수 없습니다.

7월 10일까지 현상 유지를 하려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7월 5일이면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까지 유지하려면 달산리의 물이 끊어지면 양수가 중지됩니다.

그러니 하루에 2,300톤씩 적게 주어 가지고 물을 계속한다면 5일 이라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 金三星의원

- 공사 시일이 7월 10일까지 걸린다는 이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까?

◇ 市長

- 이것은 자재가 없습니다.

모타도 시내 2개소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교섭을 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전기회사에 가서 교섭도 하여야 하겠고 제일 곤란한 것은 곡선 송수관입니다.

이것은 부산이나 서울을 가도 구입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시내에서 철판을 구입하여서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철판 송수관은 10년이나 20년간은 쓸 수 있으나 이 철판은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것 40여개소의 송수관을 파서 옮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 議長

-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시민을 사랑하는 심정에서 하는 말입니다.

모든 최선을 다하여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시장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기기로 하고 오늘 이 문제는 전원 가결을 보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전원 찬동 가결)

◇ 建設課長

- 공사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시장님께서 어떤 돈이라도 빌려서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후 조치될 것 같아서 의원 여러분에게 사전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李在洪의원

-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곡가가 양등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 대책으로서 긴급 방출미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에 방출하였는데 제2차로서 춘천, 청주, 전주, 광주 등지에 29일부터 방출한다는 것을 신문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목포가 들어있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측하기를 도청 소재지라고 해서 방출한 모양 같은데 도청 소재지가 아니라고 해서 방출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포도 다른 도시보다도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 까 본 의회에서 전라남도 지사 및 중앙 농림부 장관에게 목포에도 긴급 방출미를 방출하여 주십시오. 라는 건의문을 발송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만일 이 동의가 가결된다면 내일 산업과장 회의가 있으니 산업과장이 건의문을 가지고 가시는 것을 좋겠습니다.

(찬성이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 참 좋은 말씀입니다.

목포만 제외된다는 것은 이해 곤란합니다.

◇ 金三星의원

- 긴급 동의에 있어서 건의문 발송도 좋습니다 만은 이것은 소비품이기 때문에 품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소의 경비가 들더라도 건의문을 발송하고 사람이 직접 가서 교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金永完의원

- 그게 본 의원이 광주를 가서 국회의원 여러분을 만나서 식량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李在洪의원 말씀과 같이 대전, 춘천 등지에 방출하는 것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여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농림부 장관의 식량 방출이 입찰로 하기 때문에 모리배들의 이익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李在洪의원 발언에 참가해서 방출할 때는 시민에게 직접 배급할 수 있는 방출을 하여 미가 조정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식량이 모리배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라는 것을 건의문에다가 넣었으면 하겠습니다.

◇ 李在洪의원

- 식량 문제는 정부에서 제일 먼저 방출할 때는 입찰제로 하였으나 그 뒤로는 전부 반으로 나뉘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문에 넣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金子洪의원

- 지금 방출미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호남신문에 의하면 방출미 도정이 목포에서 중지되고 있어 전부 회송하라는 말이 있는데 만일 이것이 회송된다면 목포에 일대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이 점으로 보아서 산업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산업과장 말씀하여 주십시오.

◇ 産業課長

- 방출미 도정 실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음

◇ 孫白洙의원

- 李在洪의원 의원 긴급동의가 가결된다면 내일 산업과장이 광주 회의에 참석하게 되고해서 긴급동의에 참가해서 산업과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내무부와 위원회에서 제가 주장해서 산업과장 자신 노력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800가마의 정조가 목포에서 도정된다면 백세미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목포에는 아시다시피 극빈자가 많으니 곤란한 이분에게 백세미를 배급한다면 대단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긴급 동의에 참가해서 그것을 활용하여 시민의 복리가 된다면 이 이상 더 혜택이 없겠습니다.

이 점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기 바라며 긴급 동의에서 받아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표결합시다. 하는 이 있음)

◇ 産業課長

- 적극 노력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 議長

- 건의문을 보내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전원 찬동 가결

그 다음 부의안건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1955(428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 행정부 대 의원간에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이 있었음

내용은 형편에 의하여 속기 불능

◇ 金昌賢의원

-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전문 기록 불능하였으나 시장의 적극적인 활약으로써 4,500만개의 부과 개수가 2,750만개로 되어 시민의 부담이 경하여 졌으며, 각 분과 위원회에서 심심 검토하여 본 회의에 회부한 것이니 착오가 많이 없으면 본 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각 의원과 행정부간에 질의응답이 있었음

◇ 金三星의원

- 우리 목포시에 250명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털어내어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의용소방대에 상임대원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상임대원의 보수로서 각 대원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주고 있다고 하니 여기 예산의 소방비에 9사람의 예산이 서 있으니 이것을 9명으로 하고 1명분을 의용소방대로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수정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 金永完의원

-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이 있었는데 정식 소방대원은 경찰국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9사람은 목포시 의회를 거쳐서 시비에서 내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으로 이하 약)

◇ 議長

- 종합 심의에서 통과된 수정 동의할 때는 7청까지 있어야 하는데

(3, 4, 5, 6, 7청이요. 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집행부와 의원간에 질의응답이 있었음)

그러면 김삼성의원의 수정 동의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을 보았습니다.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소방서장의 출석을 하였으나 쾌히 승락하였음)

◇ 李在洪의원

- 각 분과위원회에서 들어온 그 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 저는 개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에서 520만환을 삭감하자는 개의입니다.

그 이유인즉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집행하고 그렇게 급하지 않는 것은 차 후에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시민의 부담이 경해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동시장 개축비 220만환 금액을 삭감하고 도로교량비에서 300만환을 삭감하여 계520만환 입니다.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이러한 사업은 그다지 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라도 삭감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음

각 의원간에 개의와 동의에 대한 찬동 발언이 있었음

◇ 鄭應杓의원

- 저는 재 개의하겠습니다.

즉 제1항 6목 특별관공비 이것이 전년도 예산보다 1,098,400환이 증 되었으니 이것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사무비 시 본청에서 제6목 특별관공비 110만환에서 52만환을 삭감하고 또 소모품비 100만환을 삭감하고 인쇄비 100만환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병원 수입부에서 소모품비 702,000환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소방비 소모품비 21만환 425만환 중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얼마하고를 합하여 520만환을 삭감함과 동시에 계획대로 도로공사와 중동시장을 개축하도록 할 것을 재 개의합니다.

◇ 金子洪의원

- 지금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이것을 조정하기 위하여 10분간 휴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대로 계속 합시다. 하는 이 있음)

◇ 吳世一의원

- 명랑한 기분으로 표결하기를 바랍니다.

◇ 議長

- 재 개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리고 삭감하자는 것이니까 개의에 첨가하지요.

※장내 소란

◇ 鄭應杓의원

- 삭감은 하지만 목적이 틀립니다.

◇ 議長

- 그러면 재 개의에 찬성 있습니까?

그럼 재 개의는 찬성이 없어서 부결되었습니다.

또 개의에 찬성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이것 7청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재청까지 밖에 없어서 부결되었습니다.

◇ 明南喆의원

- 이미 삭감하기로 하였으니 어디까지나 시민의 담세력에 비추어 사업 방면에 치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산비, 비품비 271만원 이것을 전부 삭감할 것을 재 개의에 부언합니다.

이유는 목포시민의 담세력에 비추어 이러한 쪼차를 살 필요가 무엇이나 할 것입니다.

◇ 鄭應杓의원

- 수락하겠습니다.

◇ 議長

- 개의는 7청까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성립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라고 생각하신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가 9표로 가결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1955(4288)년도 목포시 동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이미 제안 이유는 먼저 말씀 들었고

(오늘 회의는 그만 합시다. 하는 이 있음)

◇ 明南喆의원

- 오늘 회의는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계속합시다. 하는 이 있음)

※ 장내 소란

◇ 金子洪의원

- 동정 수득은 이미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심 검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鄭應杓의원

- 아무리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문사나 다른 분과
위원회에서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걸리더라도 질의 시간을 주기 바랍니다.

◇ 金永完의원

- 동정 특별 회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 동정세가 지금 현재 어느정도 되는가?

◇ 書記 박찬대

- 1954(4287)년도 1기분 75%이며, 이로써 예산액 미달이 150만원이고 2기분
부터는 동자율적으로 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법인세, 동정세를 합해서 37만원 정도이고 거반에 총무과에서
받은 동정세가 30여 만환 입니다.

그리고 6월 10일 현재 각 동에 징수성적에 의하면, 1위가 75%, 제일 미진한
동이 50% 그래서 평균 65% 정도입니다.

◇ 金三星의원

- 장내 소란으로 속기 불능하였으나 일반 동정세와 법인 동정세 부과에 있어 차가 너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요지였음

◇ 市政係長

-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음

※ 장내 소란

◇ 鄭應杓의원

- 이 동정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시정계장 부임 이래 본 궤도에 섰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한가지 느낀것은 동직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고충을 받고 있는데다가 시청에서 직원들이 나오면 동직원들을 너무나 무시하기 때문에 동에 있는 유능한 직원은 본청으로 들어 올려 로 애를 쓰고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본청에서 유능한 직원을 동으로 배치하여 동정을 원활히 할 것이며, 매월 말에는 반상회의가 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시직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실례를 본다면 계장급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 간부급에서도 직접 감독을 하여 주었으면 하겠다는 요지였음

◇ 孫白洙의원

- 동정 특별회계의예산도 액면이 대단히 큼니다.

그러나 내무분과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일단 통과는 하였으나 우리 목포시의 각 세대에 할당하면 커다란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 생각해서 현재의 23개동을 3분지 2로나 폐합한다면 세대당 부담이 경해지지 않는가 합니다.

또 하나는 예에 의하면 갑동과 을동이 있는데 갑동에는 100환, 을동에는 200만환 또는 150만환하여 차가 너무 크다.

그러니 이 점 연구하여 본 일이 있는가?

앞으로 그런 연구를 할 용의가 있는가?

말씀하여주시요.

◇ 金三星의원

- 동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심심 토의 하였을 것입니다 만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정하였는가?

원안대로 하였는가?

애매합니다.

그것을 보고하여 주십시오.

◇ 吳世一의원

- 무수정 통과된 것입니다.

◇ 金永完의원

- 본 건 어느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만은 동정세 징수에 있어 가지고 장려금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강구할 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 書記 박찬대

- 동폐합 이것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복잡한 동폐합 시정은 우리도 생각한바 있으나 단시일 내에는 못하나 앞으로 연구해서 행정부에서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과금액 차이에 있어서 이것은 동 자치제로 한 이상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그러므로 행정부에서도 앞으로 연구를 계속해서 될 수 있으면 실정에 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장려금, 이것도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현재 동정세 특별회계의 형편으로 보아서 아직까지 생각하여 본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점 앞으로 시민의 부담이 경해지면 징수장려금 규정을 정하여 적용하겠습니다.

※ 장내 소란으로 金昌賢의원, 鄭應杓의원의 발언에 대한 찬조발언 속기불능

(토론 종결함시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 그러면 金子洪의원의 동의에 찬성있습니까?

(찬성이요. 하는 이 있음)

(동특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전원 찬동 가결

그 다음 1955(4288)년도 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의하여 주십시오.

◇ 金永完의원

- 이 예산은 각 과에서 낸 것이며, 어느 과를 막론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 특별회계에 수도료 징수장려금에 있어 가지고 100분지 30으로 하고 징수비는 100분지 16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서는 1000분지 16과 1000분의 30의 균등을 취할 수 없는가?

답변하여 주십시오.

◇ 市長

- 재무과하고 균형을 마치겠습니다.

◇ 孫白洙의원

- 수특 세출면에 배수지 수선비, 시설비

(규칙이요. 하는 이 있음)

◇ 李文吉의원

-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 吳世一의원

-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 鄭應杓의원

- 수특회계 세출 예산을 보니까 이러한 감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이 물에 대한 예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 역시 이 수도 특별회계에 모든 시설비, 수선비가 많아서 훌륭한 목포에 수도 사정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입에 대한 재산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건데 사실상 기술 사무면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전반에 현장에 가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쌀 두되를 가지고 모래 한되를 바꾸자고 하여도 안바꾼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만큼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하여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고하니까 보건데 돈이 있으면 올해 주었으면 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못할 것이고 하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3청이요.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만장이치로 가결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오후 6시)

제38회 제6차 임시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1. 일 시 : 1955(4288)년 6월 30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회의성립

1. 참석의원 : 15명

朴贊圭, 吳世一, 李文吉, 孫白洙, 金南鎭, 金昌賢, 鄭應杓, 李在洪,
金慶禧, 金永完, 李小圭, 金子洪, 金三星, 金京炫, 李福柱

2. 불참의원 : 6명

文宅鎬, 金吉煥, 陳福春, 林一男, 金八用, 明南喆

3. 참석공무원 :

市長, 副市長, 各 課長, 木浦市 教育監, 庶務課長

4. 개회선언 : 朴議長(오후 10시 30분)

5. 보고사항 : 무

6. 부의안건 :

1. 1955(4288)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경정예산안

※ 오전 11시 정각 金八用, 明南喆의원 참석

◇ 李文吉의원

- 본건 심의 결과 발표

◇ 吳世一의원

- 종합 심의 결과 보고

※ 목포시 교육감과 각 의원간에 경정예산에 대하여 약 20분간 질의응답이

있었음

◇ 孫白洙의원

- 본 건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3청)

표결 결과 재석 17명 전원 찬동 가결

2. 1955(4288)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 사친회비 및 각 잡부금 징수에 있어 목포시 교육감과 각 의원간에 질의
응답이 있었음

◇ 金南鎭의원

- 본 건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 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사친회비를 징수 안할 것을 조건으로)

(재청)

일부 수정 재역

세입출부

항3. 교육세 : 55,000,000환을 46,750,000환으로 삭감

항 : 27,500,000환을 19,250,000환으로 삭감

부기 부과지수 1개당 1환을 70전으로 삭감

세입합계 : 139,443,200환을 131,193,200환으로 삭감

세출 :

관 10 : 영선비 예산액 37, 234,800환을 28,984,800환으로 삭감

세출합계 : 139,443,200환을 131,193,200환으로 삭감

◇ 金昌賢의원

- 본 건 문교사회분과 위원회에서 삭감한 안대로 통과할 것을 개의
(부과 지수 1개당 1환을 50전으로 삭감 계상한것)

표결결과

개의집 재석 17명 중 가 4표 부결

동의집 재석 17명 중 가 10표 가결

◇ 孫白洙의원

- 시정 감사를 내 7월 10일부터 7월 말일까지 실시할 것을 동의
재석 17명 중 전원 찬동 가결

◇ 議長

-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

◇ 議長

- 폐회선언

(오후 2시 18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1955(4288)년 7월 5일

議長 : 朴贊圭

議員 :

” :

作成者 書記 : 洪南植

제38회 제6차 임시회 목포시의회 속기록

◇ 議長

- 착석하여 주십시오.

에 - 15명 출석으로써 성원되었습니다.

이제부터서 개의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교육청 관계를 문사위원회에서 회의 상황을 보고하여 주십시오.

문교사회 위원장 의원과 내무위원장으로 부터 각 각 회의 상황 보고가 있었음

그러면 부의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1954(4287)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제3회 경정예산을 심의하여 주십시오.

◇ 孫白洙의원

- 대체 토론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만은 문사에서 1954(4287)년도 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 또 내무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입세출에 증감은 없고 과목유용 정도로써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경정예산의 내용을 믿고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장내 소란

※ 金永完의원과 庶務課長의 질의응답이 있었음

◇ 李在洪의원

- 이 경정 예산을 보건데 세출 예산에 있어서 과목 유용에 불과한 것이며, 문사와 내무위원회에서 심심 검토하여 넘어온 것이며, 세출 과목 유용이니 그러니까 아까 孫白洙의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 明南喆의원

- 경정 예산 관 국민학교 영선비, 시설비 150만 원을 가지고 국민학교 부족책상 결상을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개 될 것이며, 현재 5개 국민

학교에 부족 책걸상을 충당할 수 있는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 庶務課長

- 정확한 총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만은 대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100만환 예산을 가지고 작년 4월경에 총수 750개를 사서 각 학교에 150개 평균 배정하고 그 후 각 학교에 칠판이 나빠서 7, 80만환을 들여서 대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학교에 부족수를 요구한데가 있어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 장내 소란으로 明南喆의원과 金永完의원 발언 속기 불능 내용은 庶務課長에 대한 질문

◇ 明南喆의원

- 지금 각 학교에서 책상 걸상의 부족한 개수가 770개 입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본다면 북교 80, 서부교 120, 산정 200개, 유달이 250개, 중앙이 120개인데 그중 어느 정도를 보충하기 위하여 이 금액이 나온 것인가?

다만 두 학교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전부 부족하니까 5개 국민학교 전부에 비율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인데 이 두 학교에만 보충 한다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庶務課長

- 연도는 지나고 세입은 없고 그래서 염출할 만한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한 것은 신년도에 충당 하고자 합니다.

◇ 金永完의원

- 징세 장려비 50만환을 가지고 도저히 해결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관계 징세 장려비는 100분지 30으로 되어 있는데 시청에는 100분지 16으로 하고 있으니 시와 균형을 같이 하고 나머지를 사업에 충당할 수는 없는가?

답변하여 주십시오.

◇ 教育監

- 징세 장려비 3부를 1.6부로는 할 수 없는가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징세직원은 단일세이고 시청은 여러가지 세금을 징수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 金三星의원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상정 하였을 때 특별부과금이 상당히 징수되었는데 그것이 조금도 조월(二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징세 장려비 3부는 이번 예산에 전연 관련이 없는 것인가?

또 아까 서무과장은 이 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까지 그 돈은 써 버린 것을 추가 하였는데 이 다음에도 다 쓴 다음 추가경정 예산을 낼 것인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 教育廳 庶務課長

-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2기분 교육세 납기가 3월만인데 의회의 건의에 의해서 고지서 발부 후 지금까지 원활한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 수입이 작아진 것이며, 앞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겠습니다.

◇ 李文吉의원

- 요번에 교육감께서 답변한 것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문사위원회에서 답변할 때는 쓰지 않고 있다고 하더니 지금 교육감 말씀에 의하면 이미 50만환은 쓰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후에 경정 예산은 심의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教育監

- 쓰지 않았습니다.

6월초의 수입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표결합시다. 하는 이 있음)

※ 장내 소란

◇ 金昌賢의원

- 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은 문사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하여 가지고 내무위원회에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 역시 내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써 심의 하다가 여러가지 심정이 저 개인적으로 부당함을 지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견해는 어떤 것인가?

방금李文吉의원의 말씀과 같이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기회적이고 시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교육청 예산을 통과시킬 때 또한 추가경정 예산을 통과시킬 때도 교육청에서는 우리에게 약속은 하였으니 실천에 옮긴 일은 없습니다.

또 추가경정 예산 1,200만환을 통과할 때도 상당한 곤란이 있었습니다.

그 때 역시집행부와 우리의 생각한바 차이가 있었습니다.

1,200만환을 통과시킬 때 가진 방법과 수단을 다 취하여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400만환 이상을 부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900만환에 낙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이 우리 뒤에 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우리들을 여사히 볼 것인가?

이것을 볼 때 답변이 딱히 애매합니다.

※ 장내 소란으로 이하 속기 불능

◇ 金永完의원

- 이 경정 예산에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정리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부에서 이렇게 한 것은 확실히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 잘못을 우리가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내 소란, 장내소란으로 明南喆의원의 책상 부족수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가? 하는 발언 속기 불능

◇ 金子洪의원

- 너무나 토론이 과도한 것 같고 하니 토의 종결하고 孫白洙의원의 동의를 성립되었으니 표결할 것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 鄭應杓의원

- 우리가 아마 제 38회 6차 회의를 계속하였는데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 진행상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朴議長이 당선된 후로는 회의 규칙상 모순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38회 회의를 개최하여 가지고 방대한 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孫白洙의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청이 없으면 동의는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의가 없으면 동의가 폐기되었으니 토론을 계속 한다든지 어찌던지 하여야 할 것인데 동의는 아침에 하고 표결은 저녁에 하고 이번만 孫의원의 동의를 살리기로 하고 이 다음부터는 그런 동의는 시켜주지 맙시다. 議長님에게 충고 합니다.

※ 장내 소란

◇ 議長

-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의 동의에 가라고 생각하신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전원가결 그 다음 1955(4288)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하여 주십시오. 장기간에 걸쳐 각 의원과 교육청 대 질의응답이 있었음
형편상 속기 불능

◇ 金南鎭의원

- 예, 교육청 예산이 이미 전문분과 위원회에서 토의하여 내무분과 위원회를 회부해서 연일 심심한 토의가 있어서 재삼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예산을 결정 짓기 위하여 동의하고자 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교육감 선생님의 조건부 답변을 듣고 내무위원회

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 金昌賢의원

- 장내 소란으로 전문 기록 불능하였으나 문사에서 통과한 개당 50전으로 통과할 것을 개의 하였음

(규칙이요. 하는 이 있음)

※각 의원간에 개의와 동의에 대한 찬동 발언과 교육청 대 질의 응답에 장시간에 걸쳐 전개 되었음

(전문 생략)

◇ 議長

- 그러면 개의도 역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의부터 표결하겠습니다.

개의에 찬동하신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가 4표 부결

동의에 가라고 생각하신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가 9표로 가결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1955(4288)년도 1기분 호별세 부과금 및 특별 부과금 부과를 결정안 입니다.

◇ 金三星의원

- 호별세 부과금은 개인 당 1환이며, 특별 부과금은 1환을 70전으로 삭감하였으니 70전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전원 찬동 가결

◇ 孫白洙의원

- 제 6회 시정감사를 7월 15일부터 말일까지 하는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그리고 반 편성을 행정부에 일임 합니다.

◇ 鄭應杓의원

- 저로서는 30일간 할 것을 개의 하겠습니다.

(앉아서)

※장내 소란

◇議長

- 사무 감사를 한다면 사무 당국에서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무당국의 일반 행사에 협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總務課長

- 행정부 역시 연도 폐쇄기관계 결산관계 여러가지 있는데 아주 해주시려면 늦게 하던지 월초에 하여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孫白洙의원

- 수정하겠습니다.

15일부터 할 것을 10일부터 말일까지 수정합니다.

◇李小圭의원

- 사무 감사를 10일부터 25일까지 하고 결산 심의를 25일부터 말일까지 할 것을 첨가합니다.

◇金京炫의원

- 사무 감사는 15일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약 25일간 하면 좋겠습니다.

◇議長

- 제가 한가지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8월 5일까지 해가지고 그 동안 7월 25일부터서 말일까지는 감사집행을 하지 맙시다.

◇鄭應杓의원

- 7월 30일까지 하여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제일 끝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언제든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7월 10

일부터 시작해서 7월 말일까지 하면됩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본청을 하고 제일 나중에 동에서 하면 됩니다.

◇議長

- 그러면 7월 10일부터 7월 말일까지 하기로 감사 일정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찬성있으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전원 찬동 가결

예, 수 십을 두고 신년도 예산 심의는 우리 초대 의원으로써 최종적인 예산의 토의하시기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폐회하겠습니다.